

섬 특구 지정 방안 및 가고 싶은 섬 콘텐츠 개발

2020. 07.

제 출 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섬 특구 지정 방안 및 가고 싶은 섬 콘텐츠 개발」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07.

(재)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 사 장 김 학 모

책 임 연 구 원 : 김 학 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사장)
연 구 원 : 김 종 우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 김 병 섭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원)

【 차 례 】

제1장 과업의 개요	3
제1절 과업의 배경	3
제2절 과업의 목적	3
제3절 과업의 범위	4
제4절 과업의 수행방법	6
 제2장 전라남도 섬 현황 분석	11
제1절 전라남도 섬 일반현황	11
1. 시·군별 섬 현황	11
2. 시·군별 개발대상도서 현황	13
제2절 전라남도 섬 관련 주요 계획 분석	19
1. 도서종합개발사업	19
2.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27
제3절 최근 관광 트렌드 전망	33
1. 2020-2024 관광 트렌드 전망	33
2. 2020 관광 트렌드 전망	45
3. 감염성 질병 유행에 따른 관광 트렌드 전망	48
제4절 섬 개발 저해 관련 규제현황 분석	50
1. 섬 개발 저해 관련 법규 개요	50
2. 섬 개발 저해 관련 법규 주요내용	51
제5절 전라남도 섬 현황 종합 분석	82
 제3장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85
제1절 섬 콘텐츠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85
1. 섬 콘텐츠 국내 우수사례	85

2. 섬 콘텐츠 국외 우수사례	89
제2절 섬 규제 해소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92
1. 섬 규제 해소 관련 법규 사례	92
2. 섬 개발 우수사례	98

제4장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발전 구상 113

제1절 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113
1. 섬 콘텐츠 개발	113
2. 섬 콘텐츠 홍보	117
제2절 섬 규제 해소 방안 제시	122
1. 각종 규제 해소 방안	122
2. 특별법 제정 방안	128
제3절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제시	130
1. 지역특구제도	130
2. 국외 특구제도	139
3. 관광활성화를 위한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144

제5장 결론 및 제언 157

제1절 과업수행 종합	157
제2절 정책적 제언	159

참고문헌 163

【 표 차 례 】

【표 1-1】 과업의 수행방법	6
【표 2-1】 부처별 우리나라 섬의 개수 현황	11
【표 2-2】 전라남도 시·군별 섬 현황	12
【표 2-3】 개발대상도서 지정 현황	13
【표 2-4】 전라남도 시·군별 개발대상도서 지정 현황	14
【표 2-5】 개발대상도서 유형 분류	16
【표 2-6】 전라남도 개발대상도서 유형별 지정 현황	17
【표 2-7】 전라남도 시·군별 개발대상도서 유형별 지정 현황	17
【표 2-8】 「가고 싶은 섬」 선정 현황	31
【표 2-9】 10대 핵심 관광 트렌드 선정 결과	33
【표 2-10】 트렌드 대응 : 소소한 여행	34
【표 2-11】 트렌드 대응 :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36
【표 2-12】 트렌드 대응 : 경험소비, 여행 액티비티 전성시대	37
【표 2-13】 트렌드 대응 : 누구나 즐기는 여행	38
【표 2-14】 트렌드 대응 : 여행 트렌드 세터(trend-setter),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39
【표 2-15】 트렌드 대응 : 다이내믹 방한시장, 유동성과 다변화	40
【표 2-16】 트렌드 대응 : 관광시민, 여행 가치를 생각하다	41
【표 2-17】 트렌드 대응 :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42
【표 2-18】 트렌드 대응 : 빅데이터가 여는 AI 관광시대	43
【표 2-19】 트렌드 대응 : 공유, 여행 공간·이동·경험을 잇다	43
【표 2-20】 섬 개발 저해 관련 법규 현황	50
【표 3-1】 섬 관광 유형	85
【표 3-2】 제주도 핵심 산업 규제특례 주요내용	92
【표 3-3】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사업	99
【표 3-4】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사업	100
【표 3-5】 국외 섬 개발 우수사례 시사점	110
【표 4-1】 지역특구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23

【표 4-2】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 [1]	124
【표 4-3】 【표 4-0】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125
【표 4-4】 【표 4-0】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 [2]	126
【표 4-5】 지역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131
【표 4-6】 지역특구 지역별 지정 현황	131
【표 4-7】 지역특구와 유사특구 비교	138
【표 4-8】 일본의 특구제도	141
【표 4-9】 국외 특구제도 비교	144
【표 4-10】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의 유형 및 개념	149
【표 4-11】 체류형 생활관광의 범주	150

【 그림 차례 】

【그림 1-1】 과업의 수행절차	7
【그림 2-1】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 비전 및 발전목표	19
【그림 2-2】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 수립방향 및 추진전략	20
【그림 2-3】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 관광부문 추진전략과 계획과제	23
【그림 2-4】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 전라남도 시·군별 도서발전방향 ...	26
【그림 2-5】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 비전·목표·추진전략	27
【그림 2-6】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 사업 추진 로드맵	32
【그림 2-7】 2020-2040 관광 트렌드 키워드	45
【그림 2-8】 국내여행 YouTube 영상 중 개인 Creator 비율	45
【그림 2-9】 최근 2년간 분기별 <국내여행> 버즈량 중 주요 키워드 언급량 추이	46
【그림 2-10】 액티비티활동 中 낚시 종류 언급량 TOP10 증감률	46
【그림 2-11】 Instagram TOP20 해시태그 中 세부구역/지구 단위 여행명소 키워드 ·	47
【그림 2-12】 국내여행 액티비티 활동 분석	47
【그림 2-13】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 주요 지표	48
【그림 3-1】 일본 건강의 섬 : 건강 보양 프로그램 목적	90
【그림 3-2】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98
【그림 3-3】 외도 보타니아 안내도	101
【그림 3-4】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안내도	102
【그림 3-5】 그리스 산토리니섬	105
【그림 3-6】 이탈리아 카프리섬	106
【그림 3-7】 일본 나오시마섬	107
【그림 3-8】 싱가포르 센토사섬	109
【그림 4-1】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캠핑장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113
【그림 4-2】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 운영	114
【그림 4-3】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캠핑요리 개발 및 보급	115
【그림 4-4】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야간 특화축제 개발	116
【그림 4-5】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12경 선정	117

【그림 4-6】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캐릭터 상품 개발	119
【그림 4-7】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홍보 유튜버 경진대회 추진	120
【그림 4-8】 지역특구제도 운영체계	130
【그림 4-9】 지역특구 규제특례 운영체계	132
【그림 4-10】 중리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 추진과정	148
【그림 4-11】 대만 컨닝	152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제2절 과업의 목적

제3절 과업의 범위

제4절 과업의 수행방법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 2015년부터 추진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관내 여러 섬들이 홍보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그러나 전라남도 관내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 특히, 각 섬별 역사·전통·스토리 등 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아울러 젊은 층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도 필요함
- 전라남도 관내 여러 섬들이 지역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 섬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천혜의 섬·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관내 섬 관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 국제적인 섬 여행지로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라남도의 섬 관광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거점 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전라남도는 관내 섬을 개발하려고 하나 서남해안 대부분이 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 거점 섬에 대한 개발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함

제2절 과업의 목적

-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섬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해소 방안 및 특구 지정 방안을 마련함



제3절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계획기간 : 2020년 - 2030년

2) 공간적 범위

- 사업 대상지 : 전라남도 섬
- 분석 대상지 : 국내·외 섬 개발 관련 사례

3)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전라남도 섬 관련 주요 계획 분석
 - 도서종합개발사업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 최근 관광 트렌드 전망
- 섬 콘텐츠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 섬 콘텐츠 국내 우수사례조사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중점 파악
 - 섬 콘텐츠 국외 우수사례조사
- 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각 섬별 역사·전통·스토리 등 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
 - 젊은 층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특화상품 및 묶음 여행상품 개발
 - 섬 콘텐츠 홍보 방안

□ 섬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해소 및 특구 지정 방안 제시

○ 섬 개발 저해 관련 규제현황 분석

- 자연공원법(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현황 분석
- 전라남도 섬 규제현황 종합 분석

○ 섬 규제 해소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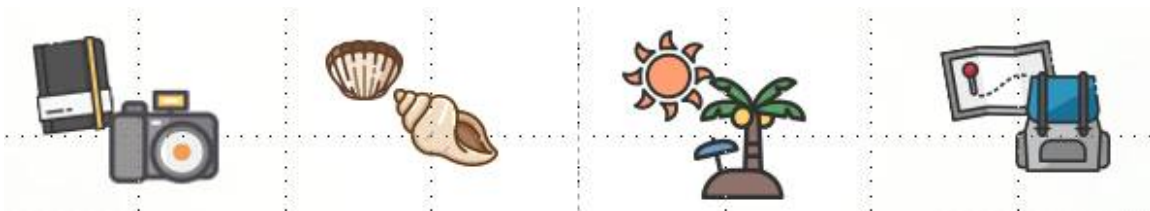
- 섬 규제 해소를 위한 법규 제정 또는 추진 국내 사례조사
- 섬 규제 해소를 위한 법규 제정 또는 추진 국외 사례조사

○ 섬 규제 해소 방안 제시

- 각종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제시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운수시설<「공항시설법」에 의한 경량항공기 비행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리나항만 등>, 운동시설·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숙박시설 등 설치제한 해소
-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 해소 방안 제시

○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제시

- 특구 관련 일반사항 및 최근 동향
- 국내 관광특구 관련 주요 사항 및 법규 분석
- 국내 관광특구 현황 분석 (국내 관광특구 유형 분석 포함)
- 국내외 섬 특구 개발 사례조사
- 관광활성화를 위한 섬 특구 지정 방안
 - 섬 특구 지정 기준 제시(사업 범위, 규모, 개발방식, 절차 등)



제4절 과업의 수행방법

1) 과업의 수행방법

- 본 과업은 세부내용에 따라 문헌조사, 현장조사, 종합분석, 벤치마킹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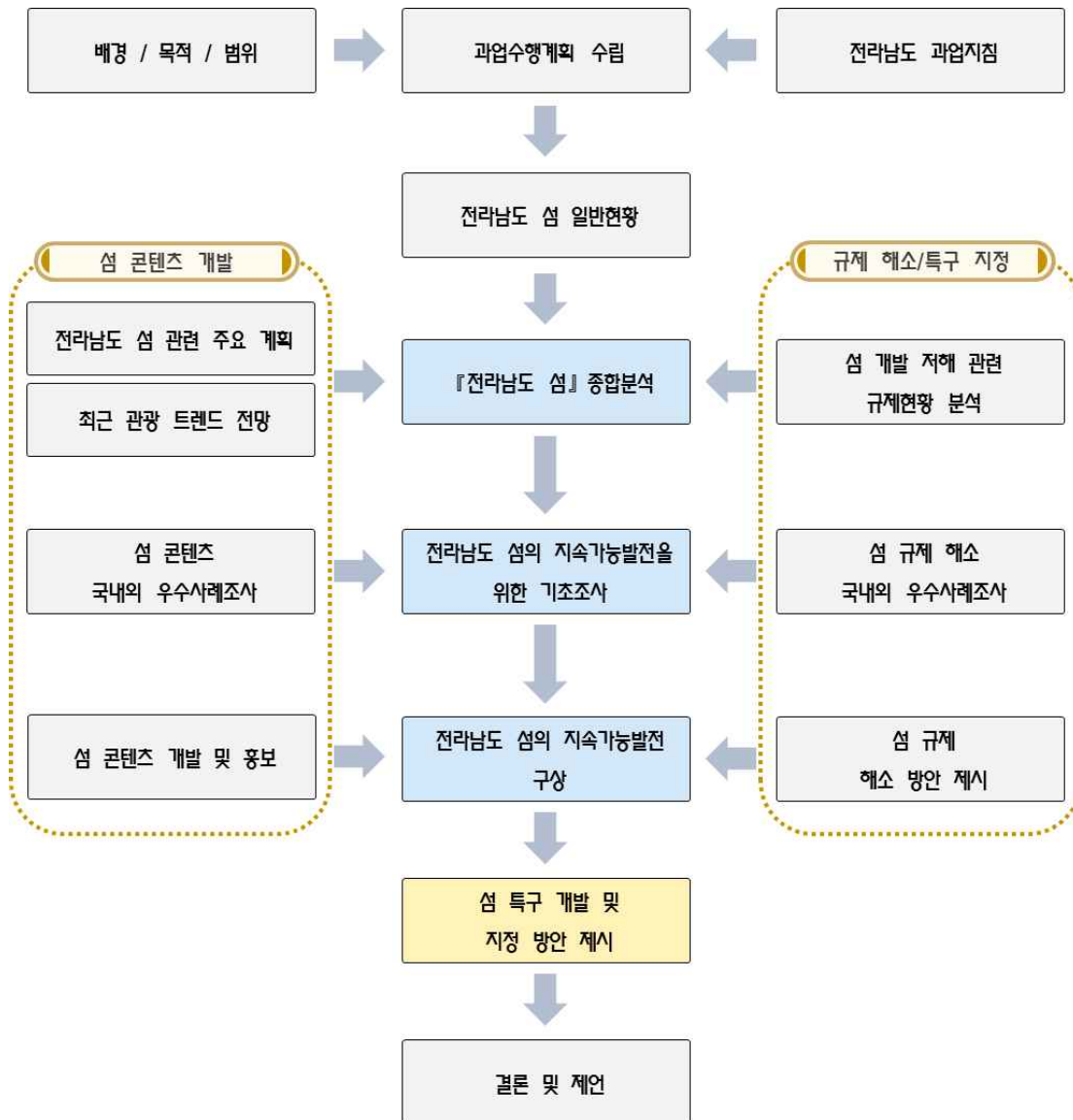
【표 1-1】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의 세부내용	과업의 수행방법
• 전라남도 섬 관련 주요 계획 분석 • 최근 관광 트렌드 전망 • 섬 콘텐츠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 섬 개발 저해 관련 규제현황 분석 • 섬 규제 해소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제시	문헌조사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계획보고서, 실적자료, 내부자료, 언론자료 등)
• 섬 콘텐츠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 섬 콘텐츠 국내 우수사례조사 • 섬 규제 해소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 섬 규제 해소를 위한 법규 제정 또는 추진 국내 사례조사 •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제시 - 국내 섬 특구 개발 사례조사	현장조사 (실태조사, 현장 답사, 주요 사례지 답사)
• 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섬 규제 해소 방안 제시 •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제시 - 관광활성화를 위한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 섬 특구 지정 기준 제시	종합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 벤치마킹
• 과업수행 전과정을 거쳐 전라남도과 협의 및 의견 수렴	



2) 과업의 수행절차

○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그림 1-1】 과업의 수행절차



제2장

전라남도 섬 현황 분석

제1절 전라남도 섬 일반현황

제2절 전라남도 섬 관련 주요 계획 분석

제3절 최근 관광 트렌드 전망

제4절 섬 개발 저해 관련 규제현황 분석

제5절 전라남도 섬 현황 종합 분석

제2장

전라남도 섬 현황 분석

제1절 전라남도 섬 일반현황

1. 시·군별 섬 현황

- 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정의가 다양한 만큼 정확한 섬의 개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유엔해양법 협약(UNCLOS, 1994) 제121조에 의하면,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 수면위에 드러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정의됨
 -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제외됨
 -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아니하는 곳”,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로 정의됨
- 국회 도서발전연구회(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의 개수는 3,352개에서 3,952개로 상당한 편차를 보임

【표 2-1】 부처별 우리나라 섬의 개수 현황

부처	총계	유인도	무인도	비고
행정안전부	3,352	465	2,887	2018년
국가통계포털(KOSIS)	3,952	487	3,465	2018년
국토교통부	3,677	486	3,191	2016년
해양수산부	3,676	485	3,191	2017년
통계청	3,941	490	3,451	2015년

자료 :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2018. 『<섬의 날>제정에 따른 섬 발전정책 및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행정안전부 자료는 전라남도 내부 제공 자료임)

- 섬의 개수를 정확히 산정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다도해 국가임은 분명함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15,000여개, 필리핀 7,100여개, 일본 6,800여개에 이어 세계 4위의 다도해 국가임
- 전라남도에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165개의 섬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전체 섬의 약 64.59%가 전라남도에 집중해서 분포해 있음
- 전라남도 시·군 22개 중에 바다와 접하고 있는 시·군은 16개 이며, 함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섬을 보유하고 있음. 신안 857개, 여수 353개, 완도 258개, 진도 254개, 고흥 230개 순으로 섬이 많음
- 유인도는 총 273개에 면적이 1,854.81㎢이며, 무인도는 총 1,892개에 면적이 41.17 ㎢임. 유인도에는 총 87,165가구가 거주하며, 총인구는 170,202명임

【표 2-2】 전라남도 시·군별 섬 현황

시·군	유인도		무인도		전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목포	6	2.20	5	0.26	11	0.51
여수	46	16.85	307	16.23	353	16.30
순천	-	0.00	2	0.11	2	0.09
광양	2	0.73	1	0.05	3	0.14
고흥	23	8.42	207	10.94	230	10.62
보성	3	1.10	18	0.95	21	0.97
장흥	2	0.73	12	0.63	14	0.65
강진	1	0.37	7	0.37	8	0.37
해남	7	2.56	53	2.80	60	2.77
영암	-	0.00	2	0.11	2	0.09
무안	1	0.37	27	1.43	28	1.29
함평	-	0.00	-	0.00	-	0.00
영광	10	3.66	54	2.85	64	2.96
완도	54	19.78	204	10.78	258	11.92
진도	45	16.48	209	11.05	254	11.73
신안	73	26.74	784	41.44	857	39.58
합계	273	100	1,892	100	2,165	100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 (※ 2019. 12. 31. 기준)

2. 시·군별 개발대상도서 현황

1) 개발대상도서 지정 현황

- 행정안전부 장관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 또는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하여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함
- 즉, 개발대상도서는 제주도와 일정기간 이상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한 도서 중에 보통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로 규정됨
-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에 의하면, 개발대상도서는 8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걸쳐 총 371개에 이름. 전라남도에는 11개 시·군에 걸쳐 총 215개 개발대상도서가 있어 전체 개발대상도서의 약 58.0%를 점유하고 있음

【표 2-3】 개발대상도서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시·군·구 수	도서 수	
			개수	비율(%)
인천	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4	32	8.6
경기	안산, 화성	2	4	1.1
충남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6	24	6.5
전북	군산, 고창, 부안	3	23	6.2
전남	목포, 여수, 고흥, 보성, 강진,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신안	11	215	58.0
경북	울릉	1	2	0.5
경남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7	63	17.0
제주	제주, 서귀포	2	8	2.2
합계		36	371	100.0

주) 전남 신안에 중복 선정된 도서가 있어 종전 372개에서 371개로 정정됨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라남도 215개 개발대상도서 중 신안군이 68개로 31.6%, 여수시가 42개로 19.5%, 완도군이 39개로 18.1%, 진도군이 33개로 15.3%를 점유하고 있음

【표 2-4】 전라남도 시·군별 개발대상도서 지정 현황

시·군	도서명	도서 수	
		개수	비율(%)
목포	장좌도, 울도, 달리도, 고하도, 외달도	5	2.3
여수	대경도, 소경도, 묘도, 송도(돌산), 송도(울촌), 소늬도, 대늬도, 운두도, 대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상화도, 대여자도, 송여자도, 금죽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초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수향도, 추도, 개도, 화태도, 하화도, 사도, 금오도, 안도, 연도, 낭도, 거문도, 서도, 동도, 손죽도	42	19.5
고흥	첨도, 수락도,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죽도, 사양도, 애도, 진지도, 우도	13	6
보성	장도, 해도, 지주도	3	1.4
강진	가우도	1	0.5
해남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4	1.9
무안	탄도	1	0.5
영광	하낙월도, 대각이도, 대석만도, 상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6	2.8
완도	평일도, 노화도, 넓도(고금), 소안도, 충도, 우도, 다랑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록도, 마삭도, 서납도, 넓도(토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소랑도	39	18.1
진도	금호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향도, 탄향도, 청등도, 진목도, 옥도, 가사도, 저도, 혈도, 하조도, 모도(의신), 장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소마도, 관사도, 독거도, 슬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광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대마도	33	15.3
신안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수도, 재원도, 우간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화도, 수치도, 상수치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장도, 대둔도, 다물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울도, 자라도, 부소도, 사치도, 매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문병도, 장재도, 영산도, 흥도, 가거도, 박지도, 반월도, 압해도, 증도, 임자도, 자은도, 비금도, 안좌도, 팔금도, 암태도, 하의도, 상하태도, 장산도, 도초도, 대흑산도	68	31.6
합계		215	100

주) 전남 신안에 중복 선정된 도서가 있어 종전 216개에서 215개로 정정됨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개발대상도서 유형 분류

-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에 따르면, 개발대상도서는 기초인프라 구축 상태와 가장 인접한 육지까지 선박을 통해 이동했을 때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A, B, C, D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또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 따라 i, ii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A유형은 기초인프라가 절대 부족 상태이고, 육지까지 선박을 통해 이동했을 때 1시간 이내인 도서임
- B유형은 기초인프라가 절대 부족 상태이고, 육지까지 선박을 통해 이동했을 때 1시간 이상인 도서임
- C유형은 삶의 질 향상 단계이고, 육지까지 선박을 통해 이동했을 때 1시간 이내인 도서임
- D유형은 삶의 질 향상 단계이고, 육지까지 선박을 통해 이동했을 때 1시간 이상인 도서임
- i 유형은 일자리 창출분야가 농어업 및 농어업품 가공인 도서임
- ii 유형은 일자리 창출분야가 관광인 도서임



- A, B, C, D 4가지 유형과 i, ii 2가지 유형을 교차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개발대상도서를 유형화할 수 있음
- ii 유형은 일자리 창출 분야가 주로 관광인데, 이로 인해 관광과 관련이 많은 개발대상도서로 규정할 수 있음. 개발대상도서 ii유형은 A-ii, B-ii, C-ii, D-ii 유형을 모두 합해 총 112개로 전체(전국) 개발대상도서의 30.2%를 점유하고 있음

【표 2-5】 개발대상도서 유형 분류

유형	설명	발전전략	섬 예시	도서 수	
				개수	비율(%)
A- i	인프라가 부족하고 육지와 가까우며 농어업이 발달	농어업 및 주민 생활 지원 인프라 확충 우선하고, 농어업 외 관광 등 소득기반 마련 추진	- 강화 교동도 - 거제 산달도 - 목포 상좌도	118	31.8
A- ii	인프라가 부족하고 육지와 가까우며 관광이 발달	주민 생활 지원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우선하고, 지역특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 웅진 신도·시도·모도 - 제주 마라도	28	7.5
B- i	인프라가 부족하고 육지와 멀며 농어업이 발달	농어업 및 주민 생활 지원 인프라 확충을 우선하고, 원거리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섬 개발	- 웅진 연평도 - 진도 동거차도 - 신안 추포도	112	30.2
B- ii	인프라가 부족하고 육지와 멀며 관광이 발달	주민 생활 지원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우선하고, 체류 관광 프로그램 차별화	- 웅진 대이작도 - 보령 외연도 - 신안 홍도	14	3.8
C- i	인프라가 갖추어졌고 육지와 가까우며 농어업이 발달	문화·복지·의료·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농업 외 소득원 다변화	- 서산 우도 - 목포 달리도	23	6.2
C- ii	인프라가 갖추어졌고 육지와 가까우며 관광이 발달	문화·복지·의료·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신개념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 서산 고파도 - 목포 외달도 - 영광 성낙월도	50	13.5
D- i	인프라가 갖추어졌고 육지와 멀며 농어업이 발달	문화·복지·의료·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원거리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 웅진 소야도 - 여수 사도 - 신안 하의도	6	1.6
D- ii	인프라가 갖추어졌고 육지와 멀며 관광이 발달	문화·복지·의료·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고급 체류 관광객 유치	- 웅진 덕적도 - 보령 삼시도 - 여수 거문도	20	5.4
합계				371	100.0

주) 전남 신안에 중복 선정된 도서가 있어 종전 372개에서 371개로 정정됨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유형별 개발대상도서 지정 현황

- 전라남도의 215개 개발대상도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관광과 관련이 많은 개발대상도서인 ii 유형은 A- ii, B- ii, C- ii, D- ii 유형을 모두 합해 총 47개로 전체 전라남도 개발대상도서의 21.9%를 점유하고 있음

【표 2-6】 전라남도 개발대상도서 유형별 지정 현황

유형	A- i	A- ii	B- i	B- ii	C- i	C- ii	D- i	D- ii	합계
도서 수	66	5	94	7	4	23	4	12	215
비율(%)	30.7	2.3	43.7	3.3	1.9	10.7	1.9	5.6	100.0

주) 전남 신안에 중복 선정된 도서가 있어 종전 216개에서 215개로 정정됨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신안군만 8가지 모든 유형의 개발대상도서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여수시가 6가지 유형의 개발대상도서, 영광군과 진도군이 각각 4가지 유형의 개발대상도서를 가지고 있음
- 관광과 관련이 많은 전라남도 47개(100%) 개발대상도서(ii 유형) 중 신안군이 15개로 31.91%, 고흥군이 11개로 23.40%, 여수시가 10개로 21.28%, 진도군이 5개로 10.64%를 점유하고 있음
-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은 ii 유형에 해당하는 개발대상도서를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39개의 개발대상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완도군이 ii 유형에 해당하는 개발대상도서를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표 2-7】 전라남도 시·군별 개발대상도서 유형별 지정 현황

시·군	유형	도서명	도서 수	
			개수	비율(%)
목포	A- i	장좌도	1	0.47
	C- i	율도, 달리도	2	0.93
	C- ii	고하도, 외달도	2	0.93
	소계		5	2.33
여수	A- i	대경도, 소경도, 묘도, 송도(돌산), 송도(울촌), 소늬도, 대늬도, 운두도, 대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상화도, 대여자도, 송여자도, 금죽도	21	9.77
	B- i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초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수향도, 추도	9	4.19
	C- i	개도	1	0.47
	C- ii	화태도, 하화도	2	0.93
	D- i	사도	1	0.47
	D- ii	금오도, 안도, 연도, 낭도, 거문도, 서도, 동도, 손죽도	8	3.72
	소계		42	19.53
고흥	A- i	첨도, 수락도	2	0.93
	C- ii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죽도, 사양도, 애도, 진지도, 우도	11	5.12
	소계		13	6.05

보성	A- i	장도, 해도, 지주도	3	1.40
	소계		3	1.40
강진	A- i	가우도	1	0.47
	소계		1	0.47
해남	A- i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4	1.86
	소계		4	1.86
무안	A- ii	탄도	1	0.47
	소계		1	0.47
영광	A- i	하낙월도	1	0.47
	B- i	대각이도, 대석만도	2	0.93
	C- ii	상낙월도	1	0.47
	D- ii	송이도, 안마도	2	0.93
	소계		6	2.79
완도	A- i	평일도, 노화도, 넙도(고금), 소안도	4	1.86
	B- i	충도, 우도, 다랑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록도, 마삭도, 서납도, 넙도(토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소랑도	35	16.28
	소계		39	18.14
진도	A- i	금호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향도, 탄향도, 청등도, 진목도, 옥도, 가사도, 저도, 혈도	14	6.51
	A- ii	하조도, 모도(의신), 장도	3	1.40
	B- i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소마도, 관사도, 독거도, 슬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광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14	6.51
	B- ii	관매도, 대마도	2	0.93
	소계		33	15.35
신안	A- i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수도, 재원도, 우간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15	6.98
	A- ii	화도	1	0.47
	B- i	수치도, 상수치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장도, 대둔도, 다물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울도, 자라도, 부소도, 사치도, 매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문병도, 장재도	34	15.81
	B- ii	영산도, 흥도, 가거도, 박지도, 반월도	5	2.33
	C- i	압해도	1	0.47
	C- ii	증도, 임자도, 자은도, 비금도, 안좌도, 팔금도, 암태도	7	3.26
	D- i	하의도, 상하태도, 장산도	3	1.40
	D- ii	도초도, 대흑산도	2	0.93
	소계		68	31.63
	합계		215	100

주) 전남 신안에 중복 선정된 도서가 있어 종전 216개에서 215개로 정정됨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절 전라남도 섬 관련 주요 계획 분석

1. 도서종합개발사업

1) 비전 및 발전목표

-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임
 -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은 우리 국토, 섬을 지속가능한 발전 통해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함
 -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무인도 증가 문제를 완화하고 도서지역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국가성장동력 및 영토수호의 거점으로 재발견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함
- 발전목표는 “품격 높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섬”,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 “영토수호 거점으로서의 섬”으로 본 과업 관련 목표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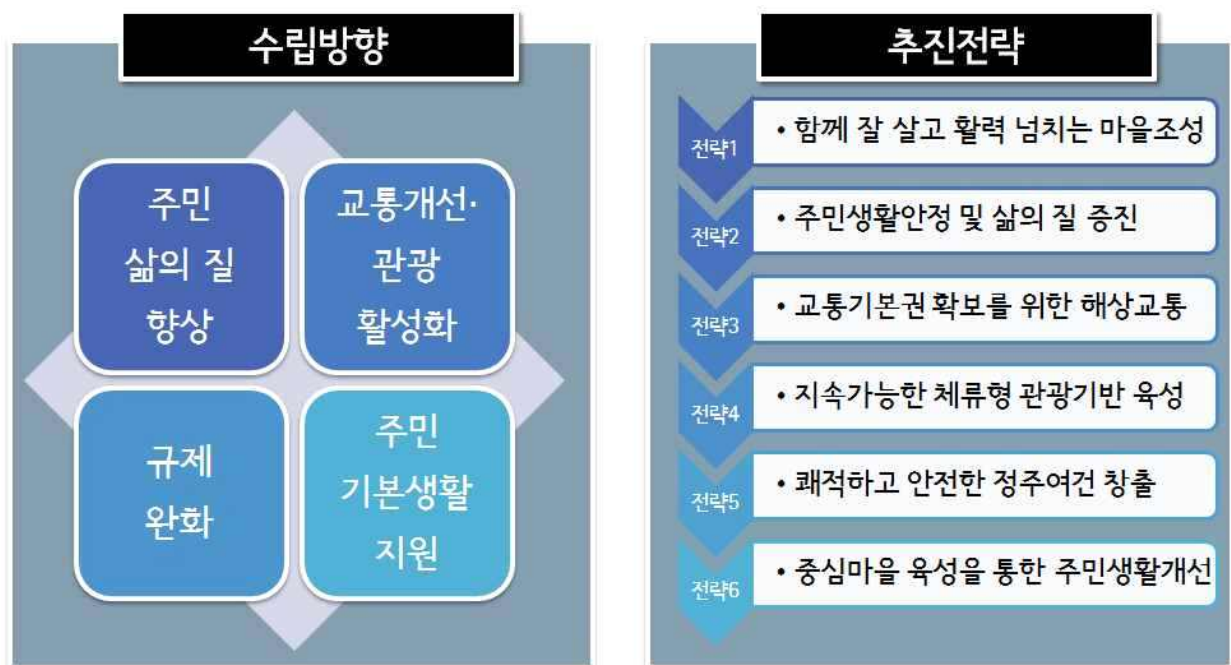
【그림 2-1】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 비전 및 발전목표

-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부와 열려있고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섬의 특색있는 문화·환경을 극대화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킴

- 섬의 특수성이 반영된 관광기반시설과 섬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등 섬의 성장동력화를 지향함

2) 수립방향 및 추진전략

- 수립방향은 “주민 삶의 질 개선”, “교통개선·관광 활성화 및 규제완화”, “주민 기본생활 지원”이며,
- 추진전략은 “함께 잘 살고 활력 넘치는 마을조성”,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증진”,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육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창출”, “중심마을 육성을 통한 주민생활 개선”임(행정자치부, 2016)



【그림 2-2】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 수립방향 및 추진전략

- 수립방향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방향은 “교통개선·관광 활성화 및 규제완화”임.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수립방향 : 교통개선·관광 활성화 및 규제완화」

■ 열린 공간 조성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

- 여객선 등 공공 교통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섬에서 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선 등 교통수단 마련하여 외부로 열려있는 공간 조성
-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륙·연도가 필요한 경우 연륙·연도교 건설을 통해 도서민의 교통 환경 개선

■ 도서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도서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경관과 희귀한 동·식물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및 소규모 개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광자원 활용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력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에 집중
-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해당 도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참여 유도
- 공원, 생태탐방로, 해안길, 등산로, 해변 친수공간 등 기반시설 확충하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신규 관광 시설보다는 주민 생활환경 시설에 집중하고 기존에 있는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활용

■ 섬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추진전략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전략은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육성”임.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육성」

■ 계획과제 1 : 섬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 및 자원가치 제고

□ 추진전략 1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섬의 관광자원 발굴

- 해안 및 해양자원, 산악자원 등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등 개발가능한 부존자원 조사 및 발굴
- 도서별 특화된 지역자원에 기반한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

□ 추진전략 2 : 섬의 매력도 증진을 통한 섬 명소화

- 도서마다 특화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섬 명소화 전략 추진 : 역사자원, 생태자원, 해

양자원 등 다양한 자원 중 각 섬만의 고유한 특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섬 고유의 브랜드 자산 창출

- 섬의 독특한 자원과 연계가능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 추진전략 3 : 섬의 고유한 자산에 대한 스토리텔링 자원발굴

- 현대의 관광산업은 문화산업과 결합하여 점차 상징적 의미와 재미를 파는 상징산업이자 감성기반 산업화 추세 :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을 자극하여 소비를 판촉하는 시대이므로 섬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게 하는 스토리텔링 활용
- 섬의 고유한 자산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개발로 관광객 유치

■ 계획과제 2 : 체류하고 싶은 섬관광 기반 창출

□ 추진전략 1 :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 국내관광 패턴도 점차 경유형 대중관광에서부터 체류형 특별관심관광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새로운 관광수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바다경관 관람 등 정적인 해양관광활동에서 보다 역동적인 해양체험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섬 고유의 생태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머물고 싶은 섬 관광 촉진

□ 추진전략 2 : 섬관광객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체류형 관광 증진

- 섬 관광은 불편하다는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시설 개선 : 관광안내 표지판, 섬 홍보물 및 탐방안내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 유치
- 특히,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개선함에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섬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개발 유도

□ 추진전략 3 : 관광인식 개선을 통한 환대 서비스 증진

- 고령화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관광객 환대의식 결여 : 관광인식 개선과 같은 마인드 제고에 주안점을 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함
- 섬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 실시

■ 계획과제 3 : 섬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 1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섬 관광 개발

-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섬 관광이 외부 자본 및 관광객들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도서주민의 다양한 삶이 담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형(edutainment: education + entertainment) 관광자원개발 : 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추진전략 2 :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
 - 지역주민과 교류가능한 관광자원개발 :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생업과 연계가능한 관광자원개발
 - 지역주민 관광해설사 양성 등 지역주민이 관광산업에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광 일자리 창출
- 추진전략 3 :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 대규모 관광산업으로의 발전에 제약이 있는 도서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 섬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주민소득 연계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활용



【그림 2-3】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 관광부문
추진전략과 계획과제

3) 전라남도 시·군별 도서발전방향

□ 목포시

- 특성화, 삶의 질 향상, 네트워크 구축 추구
 - 도서별 차별화될 수 있는 테마설정, 소득원의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 달리도- 외달

도-율도-장좌도-고하도 연계성 강화

- 달리도는 일상과 체험의 섬, 율도는 풍요로운 생산의 섬, 외달도는 사랑과 문화예술의 관광섬, 장좌도는 역사문화관광의 섬 조성

□ 여수시

- 섬 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시설 마련
-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기반시설 확충
- 추진목표: 해양레포츠 도시 구축,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고흥군

-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주여건 개선
-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난 방지
- 도서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섬 특징을 살린 지속가능한 관광 구축, 섬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사업 발굴

□ 보성군

- 장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 갯별경관의 보전과 관리로 자연환경과 어업유산의 조화 유지
 - 전남도 도립공원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 강진군

- 도서종합 개발사업 연차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수립

□ 해남군

- 도서민의 경제적 자립 및 정주 여건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시설 보강 추진

□ 무안군

- 도서주민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추진
- 무안군 유일한 도서로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아름다운 섬으로 개발

□ 영광군

- 독특한 자연환경 및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 기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운 도시지역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 수요 흡수
-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육지부와의 개발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내륙중심에서 해양중심의 관광패턴 변화에 대처

□ 완도군

- 주민 기본생활 지원차원 및 주민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선착장, 물양장, 해안도로 및 위험지역의 사전 대비로 주민 안전시설 강화
- 모도와 인근 섬의 연계사업을 강화하여 품격 높은 삶의 터전 마련

□ 진도군

- 도서별 유형화(어업 및 가공)에 따른 집중투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관광거점형 도서개발, 도서권역 관문어항 명소화 추진
- 국립공원 그대로의 자연, 최고 품질의 특산품,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서의 특성을 살려, 집약적으로 투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신안군

- 낙후지역 이미지를 개선, 영토수호의 거점으로서의 섬 가치 향상
- 정주여건 개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재난을 대비 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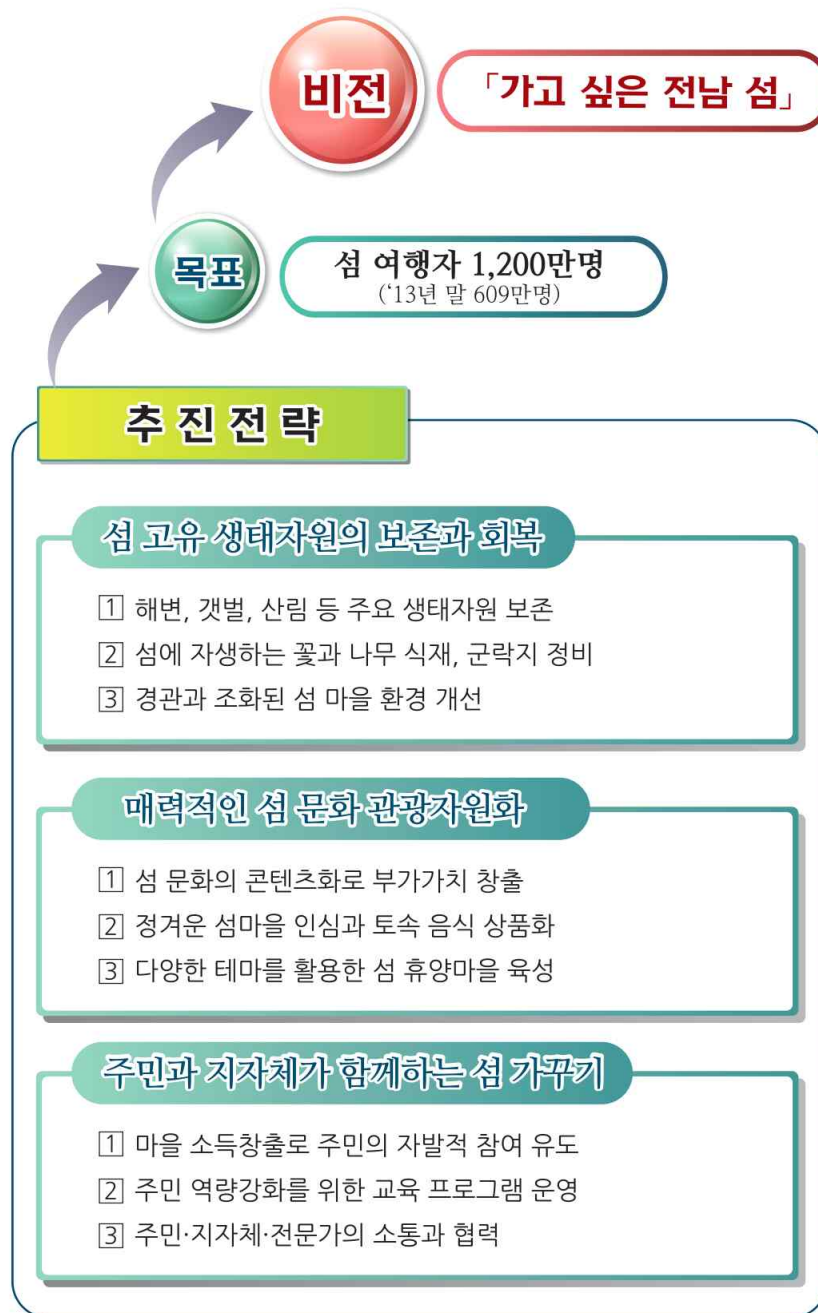


【그림 2-4】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 전라남도 시·군별 도서발전방향

2.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1) 비전 · 목표 · 추진체계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의 비전은 「가고 싶은 전남 섬」으로 섬 여행자가 연간 1,200만명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수립함



【그림 2-5】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
비전·목표·추진전략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섬의 정체성을 유지보존하는 섬 가꾸기 추진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가 확산

(1) 섬 고유 생태자원의 보존과 회복

- 섬 경관자원을 잘 보전·정비하는 것이 곧 ‘섬 가꾸기’
 - 섬은 유리잔과 같아 잘못 만질 경우 쉽게 망가짐
 - 해변, 갯벌, 산림 등 섬의 독특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발사업 지양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미 훼손된 경관의 재생사업 추진
- 섬 지역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복원
 - 자생하는 꽃과 나무 식재, 군락지 정비
 - 태풍, 해풍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된 산림 복원
- 경관과 조화된 섬 마을 환경 개선
 - 경관 훼손 없는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소득 사업 추진
 - 돌담길, 나무 울타리 등 섬 정서를 살릴 수 있는 마을 환경 정비

(2) 매력적인 섬 문화 관광자원화

- 지역특성을 살림 창의적 아이디어와 콘텐츠 발굴
 - 섬 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정리를 통해 창의적 사업 발굴
 - 전통문화의 발굴·복원으로 새로운 섬 문화 콘텐츠 창출
 - 화가, 소설가, 시인 등 예술인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 발굴
 - 여행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의 스토리텔링
- 정겨운 섬마을 인심과 토속 음식의 상품화
 -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개발

- 섬 주민의 정겨운 인심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교육을 통해 여행자 맞이 준비 → 잔잔한 감동을 통해 다시 찾는 섬 여행지로 부각
- 건강(치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들을 겨냥한 관광상품화
-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섬 휴양마을 육성
 - 어촌체험, 전통문화, 문화예술, 휴식과 치유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섬 휴양마을 육성

(3)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섬 가꾸기

- 마을 소득 창출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 사업 발굴
 - 사업 참여에 대하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주도의 자립 경영이 가능하도록 특산물 판로 개척, 기술 개발, 회계 운영 등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 설득·이해가 가장 중요
- 주민·지자체·전문가의 소통과 협력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연찬회, 토론회, T/F회의 개최
 - 계획단계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문가 컨설팅 체계 구축
 -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열성적인 사업 참여자 발굴
 - 교육 및 훈련, 연구,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육성

3) 「가고 싶은 섬」 선정

- 사업대상지 선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시·군(주민 제안) 공모 후 서류 및 현장 평가·선정

- 「가고 싶은 섬」가꾸지 추진 자문위원 중 평가단 구성

(1) 사업량 : 24개 섬

- 2015년 : 6개 섬 선정
- 2016년 ~ 2024년 : 매년 2개 섬을 공모를 통해 선정

(2) 선정 방식 : 시·군 공모

- 사업선정 과정



- 공모 절차(매년)

- | | |
|--------------------------------|--------|
| ■ 사업설명회 개최(대상 : 도서 보유 시·군 관광과) | : 6월 초 |
| ■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시·군) | : 6-7월 |
|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 7월 중 |
| ■ 서류 및 현장조사 평가 | : 7-8월 |
| ■ 익년도 사업대상지 확정 | : 9월 초 |
| ■ 익년도 본예산 편성(도, 시·군) | : 10월 |

(3) 선정 기준

- 섬의 독특한 생태, 자연, 문화, 역사 등 자원 보유 여부
- 시군 및 섬 주민의 참여 의지
-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4) 선정 현황

- 2020년 현재 다음과 같이 16개 섬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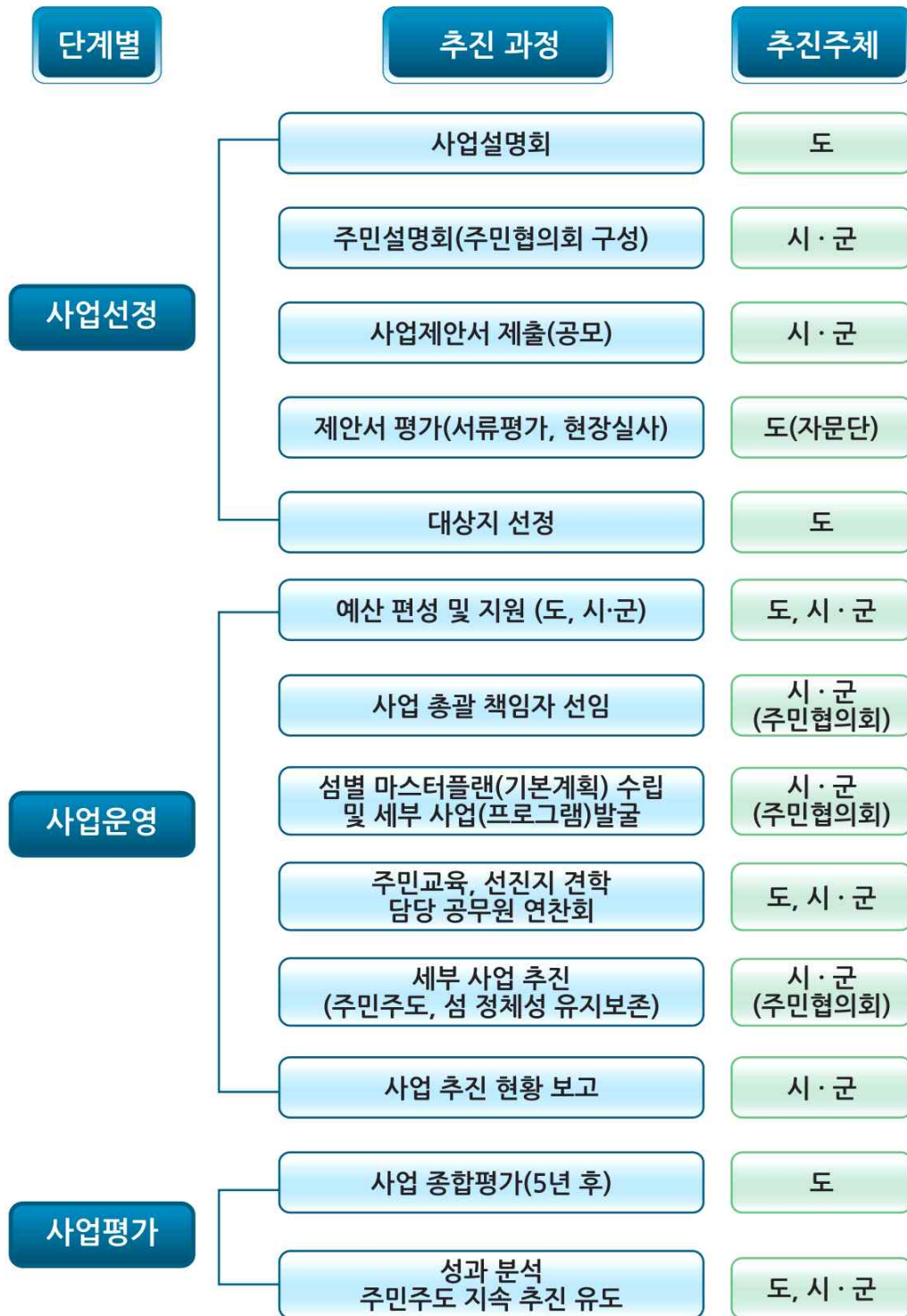
【표 2-8】「가고 싶은 섬」 선정 현황

시·군	유형	도서명	도서 수	
			개수	비율(%)
목포	-	-	0	0.00
여수	D- ii	낭도(2015년), 손죽도(2017년)	2	12.50
고흥	C- ii	연흥도(2015년)	1	6.25
보성	A- i	장도(2016년)	1	6.25
강진	A- i	가우도(2015년)	1	6.25
해남	-	-	0	0.00
무안	A- ii	탄도(2019년)	1	6.25
영광	D- ii	안마도(2020년)	1	6.25
완도	A- i	소안도(2015년)	3	18.75
	B- i	생일도(2016년), 여서도(2018년)		
진도	B- ii	관매도(2015년), 대마도(2018년)	2	12.50
신안	A- i	선도(2020년), 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2017년)	4(7)	25.00
	B- i	우이도(2019년)		
	B- ii	박지도·반월도(2015년)		
합계			16(19)	100.00

자료 : 전남의 섬. <http://islands.jeonnam.go.kr/>

4)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도와 시·군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함
 - 소득사업,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사업을 발굴·추진함
- 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의 로드맵을 참조함



【그림 2-6】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 사업 추진 로드맵

제3절 최근 관광 트렌드 전망

1. 2020-2024 관광 트렌드 전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은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의 관광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전망함

【표 2-9】 10대 핵심 관광 트렌드 선정 결과

관광 트렌드	주요 내용
소소한 여행 : 소확행, 가심비, 가시비	-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저성장 경제 지조가 지속됨에 따라 물질적 소유를 대신해 짧고 가까운 여행으로 소유욕을 해소하는 행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가시비(가격 대비 원하는 시간 소비) 등의 소비 트렌드와 연결됨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 여행객들의 여행 경험도가 높아지면서 마을, 골목, 시장 등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일상공간에 대한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새로운 여행 공간을 찾으려는 관광객 욕구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책적 지원 등이 맞물려 지역주민들의 일상공간이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험소비, 여행 액티비티 전성시대	관광에서 기억할만한 경험(Memorable Tourism Experience : MTE)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관광명소나 랜드마크 방문 위주의 관광에서 여행객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 위주로 변화할 전망이다
누구나 즐기는 여행 : 은퇴부터 100세까지	특정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여행을 즐기게 됨에 따라 여행이 보편적인 권리로 대두되고 있으며, 시니어계층의 경우 구매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갖춘 시장 및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여행 트렌드 세터, 뉴 제너레이션	자유롭고 개성 넘치며 자존감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에 능숙하고 SNS를 중시하며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Z세대가 향후 여행 트렌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다이내믹 방한시장, 유동성과 다변화	한·중·일 외교 정세, 남북 관계 등 외부환경 요인에 따라 방한 관광시장이 급변함과 동시에 향후 동북아를 벗어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문화·관광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관광시민, 여행 가치를 생각하다	관광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 이슈와 관광 안전, 주민-관광객 갈등 등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여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인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관광 소비자의 글로벌 OTA 등 여행 플랫폼 활용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정보 탐색-상품 예약-경험 공유의 변화가 강화되는 한편, 창조적 융·복합 여행 상품에 대한 기대와 소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빅데이터가 여는 AI 관광시대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강화되고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맞춤형 여행이 집단지성 등 여행 정보 획득 경로의 재편뿐 아니라 여행 상품의 콘텐츠 및 소비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공유, 여행공간· 이동·경험을 잇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광부문에서도 숙박 공유, 모빌리티 공유, 경험의 공유 등 국내 여행행태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소소한 여행 : 소확행, 가심비, 가시비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기 근거리 여행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물질적 소유나 여행 비용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단기 근거리 여행 경험을 통해 충족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 여행 경험이 증가하고 일상화 되면서 국민들이 짧고 가까운 여행을 즐기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스테이케이션(Stay와 Vacation의 합성어 : 집에서 휴가는 보내는 것), 호캉스(Hotel과 Vacance의 합성어 :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등 다양한 여행 행태를 만들어냄. 생활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는 추세임

【표 2-10】 트렌드 대응 : 소소한 여행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소확행, 단기 근거리 여행 증가 • 여행 일상화, 가심비, 가시비 → 국내, 해외/성수기 집중 완화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여행 (스테이케이션, 호캉스)	• 수요 변화 면밀히 진단 → 수요 세분화 및 수요 대응 다양한 상품 개발 • 신규 비즈니스 모델 수립 •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 수립	• 도시, 지역 등 근거리 여행 수요에 맞춰 여가 소비용 시설과 콘텐츠 육성 • 거주지역의 관광 콘텐츠와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 관광의 개념 재정의, 관광 실태 조사 개편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산업계에서는 수요를 세분화하여 맞춤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 계층별 심리와 소비 성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함. 또한 수요에 맞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여가 공간을 비롯해 콘텐츠를 더 많이 확충하여야 하며, 더불어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광 콘텐츠 및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주는 내부지향적 정책 추진이 필요함. 한편 소소한

여행 트렌드는 일상 생활권으로부터 떠난다는 기존의 관광 정의와 다른 형태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광 및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와 각종 관광 실태조사가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 여행 지역 관점에서 보면 과거 관광명소, 유적지, 랜드마크 중심의 목적지에서 마을, 골목, 시장, 거리 등 지역주민의 일상 공간으로 관광지에 대한 공간 경계가 모호해짐.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여행 경험도가 높아지면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트렌드는 SNS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움에 복고의 의미를 더한 신조어인 뉴트로(New-tro)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여행 목적지에 있어서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일상 공간이 관광지화 되고, 대중매체와 SNS 등에 소개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혼잡·교통 체증·임대료 상승 등에 의한 주민들의 비자발적 이주·소음 발생·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여행 경험에 대한 공유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여행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객이 증가함. 이에 따라 낯선 여행지에 장기간 머무르며 지역을 제대로 알고 몸과 마음의 안정도 얻는 여행 행태가 증가할 것임
- 이상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 업계에서는 일상 공간의 어떠한 요소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라이프 스타일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유산 관광 재생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여행 업계에서는 가이드를 대상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마을관광 에티켓 등을 교육하고, 가이드로 하여금 관광객들이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으로 첫째, 일상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개발 정책 및 계획이 필요함. 둘째,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등의 부정적인 문제를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넷째, 관광으로 인

한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표 2-11】 트렌드 대응 :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일상 공간의 관광지화 -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 오버투어리즘 이슈 제기 -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 수요 증가	- 수요 대응 상품 다각화(라이프스타일 관광 상품, 지역 유산 관광재생 상품 등) - 지역유산 재생 - 지역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개발 - 오버투어리즘 문제 대응, 가이드 교육	- 일상 공간 적용 가능한 새로운 관광개발 정책 및 계획 수립 - 재생사업 시, 지역 고유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 오버투어리즘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 - 지역관광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역상생 관광·문화 마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경험소비, 여행 액티비티 전성시대

- 관광객의 여행 경험도가 높아지면서 단순 방문과 관람보다 여행에서의 기억에 남는 경험과 체험을 더 중요시하고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여행 선택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여행 경험이 많은 프로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여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활발히 공유하는 경향을 보임. 여행객이 단순 소비자에서 생산도 겸하는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 변화하는 현상은 여행 정보뿐 아니라 여행 목적지에서도 나타남
- 액티비티 중심으로 여행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역시 크게 성장하는 추세임.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품을 중개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성장하면서 여행 액티비티 트렌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여 산업계에서는 타겟층을 세분화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함. 기존 업계에서는 액티비티 시장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사업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행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 여행지에서 무엇을 하는 지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는 트렌드에 대응하여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육성 정책이 필요함. 또한 지역별 특화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입하는 신규 관광 사업자를 위하여 새로운 업종 신설을 비롯해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전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과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2-12】 트렌드 대응 : 경험소비, 여행 액티비티 전성시대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현지 액티비티 여행 인기 • 경험 중심, 능동적 여행 : 프로여행객, 프로슈머 • 액티비티 상품 플랫폼의 성장	• 타겟층 세분화 → 테마형, 특화형 상품 개발 • 경험 소비형 코스 개발 • 액티비티 연계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어떠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 수립	• 액티비티 프로그램 기획, 운영 인력 육성 • 지역별 특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신규 업종 신설,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액티비티 프로그램 안전 매뉴얼 마련 및 관리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누구나 즐기는 여행 : 은퇴부터 100세까지

-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삶의 질과 행복 추구,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등으로 인해 ‘누구나 즐기는 여행’이 관광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예측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이전과 달리, 구매력과 지출의향은 물론 온라인 쇼핑도 능함. 이들이 향후 관광소비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내 시니어층의 관광소비도 양극화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국내 여행시장이 세대, 연령, 계층에 따른 특성과 요구가 분명해지고 더욱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광산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경영 전략과 마케팅이 요청됨
- 또한 여행이 보편적인 권리의 하나로 정착되면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층의 관광향유 기회 보장과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13】 트렌드 대응 : 누구나 즐기는 여행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여행이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로 대두 • 구매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갖춘 뉴시니어 진화 • 밀레니얼 가족의 탄생 및 키즈 시장의 성장 • 장애인, 노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요구 증가	• 시니어 대상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실버 여행 상품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 밀레니얼 가족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분석 및 키즈 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 무장애 관광시설 투자 확충, 전문 상품 개발, 인식 제고와 서비스 개선 교육	• 생애주기별 관광행태 분석 및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책 개발 • 뉴시니어 여행수요 창출 및 다양한 상품개발 촉진 • 시니어층 대상 지역관광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정책 추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여행 트렌드 세터(trend-setter),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 자유롭고 개성 넘치며 자존심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삶의 재미와 만족을 추구하는 Z세대가 향후 여행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 나갈 핵심 세대로 전망되고 있음
- 관광목적지와 경험 선택에 있어서 SNS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관련 여행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유트레블’, ‘여행 스타그램’ 등 SNS 영상 콘텐츠가 여행 동기와 목적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되는 한편, 1인 미디어의 등장과 활용으로 인해 여행 정보가 기존의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전환되고, 정보 생산과 소비의 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로 소비를 결정하는 성향을 가짐. 여행 경험에서도 나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 희소성, 정체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고, 나를 위한 아낌없는 여행 소비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재미’와 ‘경험’에 가치를 두는 젊은 세대는 여행지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모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4】 트렌드 대응 : 여행 트렌드 세터(trend-setter),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 소비 주도 • 개성, 희소성, 정체성, 재미, 경험 중시 • ‘혼자 하는 여행’, ‘따로 또 같이 여행’ 패턴 지속 • SNS 영상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 밀레니얼, Z세대의 가치관, 소비 패턴, 우선순위 파악 • 젊은 세대의 취향과 감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 • 혼자 또는 ‘따로 또 같이’ 체험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 인터넷과 모바일 앱, OTA 플랫폼 등 IT 기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 관광빅데이터를 활용한 젊은 세대의 여행욕구와 소비성향 조사 분석 • 지역 고유의 관광콘텐츠 발굴 및 방문명소 육성 • 재미와 즐거움, 모험요소 갖춘 액티비티 개발 • SNS와 주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다이내믹 방한시장, 유동성과 다변화

-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관광은 한·중·일 외교 정세, 남북관계 등 대내외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면서 방한 인바운드 시장은 기존에 편중되어 온 동북아 지역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형태로 진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됨
-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조치가 시행되면서 방한 중국시장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충격을 받았음. 일부지역의 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양국 간의 관광교류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임. 일본은 지속적인 외교 갈등으로 상당기간 방한시장의 침체기를 겪었으며, 최근 수출규제로 인한 관광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아세안 지역은 한류의 대중적인 인기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방한 의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아세안 주요국들의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경쟁국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자제도의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 향후 한·아세안 간의 관광교류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15】 트렌드 대응 : 다이내믹 방한시장, 유동성과 다변화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인바운드 시장의 급격한 변화 - 중국시장의 점진적 회복 및 질적 개선요구 증가 - 외교갈등과 안보문제로 인한 일본시장 불안정성 - 아세안 지역 내 한류 확산 및 관광교류 규모 확대	- 관광위기 발생시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업계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광사업체 유형별, 규모별 위기 관리 대응 훈련 -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 개별 여행객, 아세안지역 등 대체시장 유치 강화	- 정치·외교적 갈등 문제와 민간 관광교류의 분리 - 인바운드 관광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광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방한시장 세분화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 - 한류 및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관광시민, 여행 가치를 생각하다

- 전 세계가 친환경을 넘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필환경 시대’를 외치는 가운데 관광 부문에서도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여행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점 하에 공정관광, 책임관광 등이 대두되고 있음. 관광객은 여행하는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관광시민’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
-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유 숙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관광객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광객-지역주민 간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관광 안전에 대한 이슈가 강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관광 안전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됨
- 산업계에서는 관광객들이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또한 친환경 여행 및 공정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품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 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관광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점에서 관광 정책을

재점검해야 함. 친환경 여행, 공정 여행 등 관광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함. 또한 관광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함. 끝으로 관광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식 제고뿐 아니라 안전 관리를 위한 보다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

【표 2-16】 트렌드 대응 : 관광시민, 여행 가치를 생각하다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여행 증가 •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전세계적 인식 증가 • 늘어나는 여행사고와 관광안전 의식 제고	• 관광객의 친환경 활동 유도방안 도입 • 친환경 시설과 서비스 제공 • 친환경, 공정 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 • 관광 안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안전 수칙 준수	• 지속가능한 관광 관점 하에 세부 정책 추진 • 관광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친환경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 관광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 관광 안전 대응 시스템 마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 여행 서비스의 유통구조가 여행 플랫폼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관광소비 및 관광산업 지형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는 개별 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자유여행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써 성장해왔는데, 향후는 밀레니얼 세대의 ‘마이싸이더’<mysider: my(나의)+side(~을 중심으로)+er(사람)> 성향에 발맞추어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향유될 가능성이 전망됨
-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은 긍정적으로는 편리성 증대 및 정보 활용성의 강화로 인한 관광여행 증대, 창조적 융복합 여행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여행 상품 유통구조의 독과점 강화에 따른 여행 경비의 증대, 관광산업 일자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과제도 제기될 것임
- 향후 산업 현장에서는 경험 가치 중시라는 여행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각 이코노미(Gig Economy)에 대응한 고용환경 정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경험’을 담는 관광 콘텐츠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행 상품 유통경로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하고, 비즈니스 성공 모델의 발굴과 함께 관광산업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표 2-17】 트렌드 대응 :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경험 가치 중심의 여행 상품 구매 증가 전망 • 여행 정보 생산-유통-소비 경로 변화 • 여행업의 탈경계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각축 전망 • 각 이코노미와 관광산업 일자리 변화	• 경험가치 중심의 여행 상품 조성 및 대응 강화 • 상품 유통 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 수립 • 각 이코노미에 대응한 고용환경 정비	• 경험가치 중심의 지역 관광 콘텐츠 육성 • 여행 상품 유통경로에 따른 법제도 정비(여행업법 제정 등) • 신규 비즈니스 모델 육성(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 관광산업 일자리 안정성 지원제도 정비(보험 등)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빅데이터가 여는 AI 관광시대

- 빅데이터의 실시간 축적과 분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광 목적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면서, ‘집단 지성’에 따른 개인 맞춤형 여행 정보 제공이 고도화되고, 여행 콘텐츠 경험 및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행업 부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ChatBot)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여행 추천에서부터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토털 케어로 확대되고 있음
- AI 기술은 딥 러닝(Deep Learning) 등을 통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능형 비서에서 감정교류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감성비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정책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AI 융합 기술 등 R&D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속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됨

【표 2-18】 트렌드 대응 : 빅데이터가 여는 AI 관광시대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집단지성 중 요성 부각 - IoT, AI 융합기술 발전을 통한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및 사용자 체감 관광경험의 변화	- 기업의 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속화 - IoT 기반 및 AI 기술 접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경험 제공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정책 과제 탐색 및 해결 방안 모색 - 융합기술 발전 도모를 통한 관광산업/관광지 경쟁력 강화 - 기술 발전에 따른 과제 해결 가이드라인 등 제시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공유, 여행 공간·이동·경험을 잇다

-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광 부문에서도 숙박 공유, 모빌리티 공유 등 여행행태에 변화가 전망됨
- 관광객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 현지 교통, 현지 여행상품, 현지 음식 등을 향유하고 있는데, 현지의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은 향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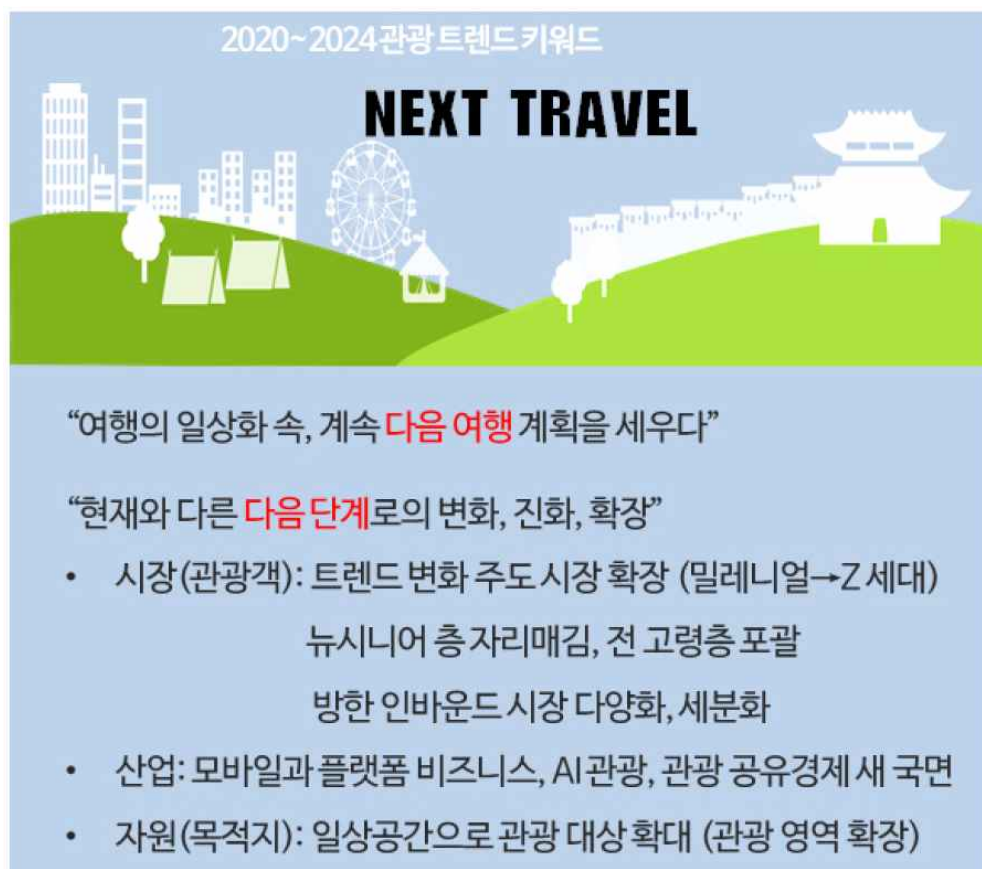
【표 2-19】 트렌드 대응 : 공유, 여행 공간·이동·경험을 잇다

주요 변화 방향	산업 대응	정책 대응
- 공유경제 비즈니스인 온디맨드 경제로 이행(플랫폼 중개 알선 서비스) - 숙박, 이동, 음식 등 여행의 다 방면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확산 '문화코드'가 부여된 '경험소비' 중시	- 글로벌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항 하기 위한 산업 혁신 도모 - 경험 소비 측면에서 가치 창출 (브랜드, 상품) - 신기술 도입 전략 추진 - 관광기업 및 자동차/ICT 기업 간 협업 도모	- 기존 업체와의 갈등 완화 및 공존을 위한 제도 정비 - 소비자 안전 확보 및 피해구제 제도 정비 - 공급자 근로복지 문제 해소 제도 정비 - 신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지역의 경험 가치 발굴, MaaS 서비스와 관광의 결합 등)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공유경제 플랫폼은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편으로 플랫폼의 기능은 공유소비 모델에서 중개 플랫폼을 의미하는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음

-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마스(MaaS : Mobility as a Service)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동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됨에 따라 이동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이러한 변화는 기존 업체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며, 새롭게 등장한 안전 등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요구되기도 함
- 또한, 공유경제가 변질하여 거대 기업화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요구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은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의 관광 트렌드를 위와 같이 10가지로 전망함. 이를 바탕으로 관광 트렌드 키워드를 “NEXT TRAVEL”로 도출함. 이는 여행의 일상화 속에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경향성을 내포하며, 현재와 다른 다음(next) 단계로의 변화 및 진화, 확장의 의미를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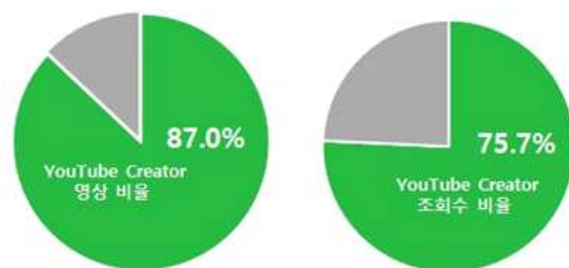
【그림 2-7】 2020-2024 관광 트렌드 키워드

2. 2020 관광 트렌드 전망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사는 2019년 12월에 발표한 『보도자료(2019.12.16.)』 : 2020년 국내여행 트렌드는 ‘R.E.F.O.R.M.’에서 2020년 국내여행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R.E.F.O.R.M.>의 6가지 키워드로 전망함

□ Regional Creator - 지역 관광명소를 발굴, 소개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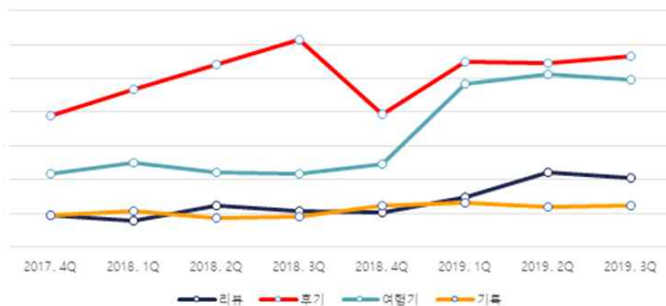
- 유튜브 채널 내 국내여행 관련 언급량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 1~3분기 국내여행 언급량은 약 8만 2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2% 상승함. 또한, 국내여행 유튜버 중 개인 크리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영상 기준 87%, 조회수 기준 75.7%로 나타남



【그림 2-8】 국내여행 YouTube 영상 중 개인 Creator 비율

- 이는 지역을 소개하는 소규모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대형 콘텐츠 공급자보다 지역여행을 소재로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강세가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Enjoy & Critique Food - 식사 종료는 별점과 함께, 여행자 모두가 음식 비평가



【그림 2-9】 최근 2년간 분기별 <국내여행> 버즈량 중 주요 키워드 언급량 추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비주얼 콘텐츠의 생산·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식 관련 시각적 콘텐츠가 증가함

- 이와 더불어 사용자 경험, 정보 공유 서비스, 모바일 지도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가 식사와 동시에 음식을 평가하는 경향이 더욱

- 소셜데이터에서도 식사와 관련된 리뷰, 후기 등 평가 관련 키워드의 언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통해 이를 예측할 수 있음

□ Find My Trip - 초개인화 시대, 세분화된 취향에 맞는 나만의 여행 찾기

- 취향의 세분화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성장은 많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임



-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는 국내여행 목적 및 활동 관련 키워드 중 ‘낚시’와 같은 일반적인 키워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얼음낚시’, ‘원투낚시’, ‘배스낚시’ 등 세분화된 활동의 키워드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는 소비자의 취향이 세

【그림 2-10】 액티비티활동 중 낚시 종류 언급량 TOP10 증감률

분화되면서 보다 만족감을 주는 자신만의 여행을 찾아 즐기기 시작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Other Destinations - 봄비는 인기 여행지에서 쾌적한 숨은 여행지로

인천	대전	광주	울산
5위 #송도맛집	3위 #대흥동카페	3위 #동명동카페	11위 #달동맛집
6위 #논현동맛집	4위 #둔산동맛집	4위 #양림동카페	...
...	...	5위 #전대카페	13위 #울산중구맛집
8위 #인하대맛집	6위 #유성맛집	7위 #상무지구카페	14위 #울산중구카페
9위 #구월동맛집	7위 #유성카페	...	15위 #삼산
14위 #을왕리맛집	10위 #둔산동카페	10위 #수원지구맛집	17위 #장현동카페
15위 #평리단길맛집	11위 #은행동카페	11위 #쌍촌동카페	18위 #달동
...	...	...	...

【그림 2-11】 Instagram TOP20 해시태그 中
세부구역/지구 단위 여행명소 키워드

○ 대도시나 인기 여행지보다는 다소 덜 변화한 곳이나 부도심지의 키워드 순위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이 관측됨

○ 이는 관광객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각종 불편, 즉 오버투어리즘을 피해 조용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됨

○ 이처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숨은 명소(Second City)를 찾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됨

□ Redesign With Technology - ICT 진화로 여행의 디지털화 가속

○ 국내여행지에서 즐기는 주요 활동 중 드론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포함되는 등 여행지에서 ICT에 기반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ICT 인프라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반으로 모바일 여행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플랫폼이나 배달앱 같은 O2O 플랫폼 역시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어 여행의 디지털화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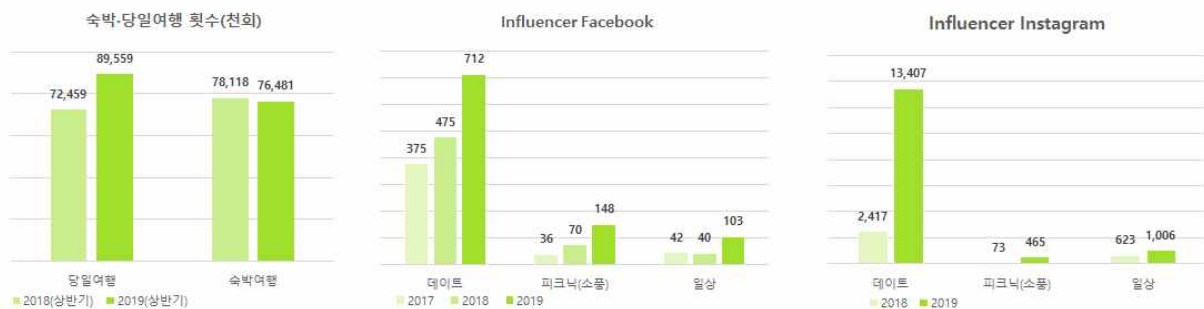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재형프로그램	요트/보트/유람선(크루즈)/잠수함	운전/스파	시티투어	VR	아쿠아리움
2	기타시설 입장권	재형프로그램	기타시설 입장권	운전/스파	시티투어	시티투어
3	놀이공원	시티투어	놀이공원	낚시	재형프로그램	키즈/키즈카페
4	시티투어	기타시설 입장권	워터파크	재형프로그램	키즈/키즈카페	동/식물원
5	운전/스파	아쿠아리움	키즈/키즈카페	기타시설 입장권	동/식물원	기타시설 입장권
6	키즈/키즈카페	운전/스파	동/식물원	워터파크	몰러장/볼링장	놀이공원
7	기타	VR	시티투어	레일바이크	기타시설 입장권	VR
8	VR	키즈/키즈카페	아쿠아리움	키즈/키즈카페	사각장	수련실/휴식공간
9	한복/의상대여	서핑	테마파크	수련실/휴식공간	N/A	운전/스파
10	방탈출	동/식물원	수련실/휴식공간	기타	N/A	재형프로그램

【그림 2-12】 국내여행 액티비티 활동 분석(左: YouTube 분석 / 右: Platform Influencer 분석)

□ Make Trips Nearby -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

- 2019년 상반기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비해 당일여행 횟수가 무려 23.6%나 증가했지만, 숙박여행 횟수는 2% 감소함. 또한 여행 관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도 데이트, 피크닉 등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언급량이 증가함
- 짧고 부담 없이 가볍게 떠나는 여행이 2020년에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



【그림 2-13】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 주요 지표

3. 감염성 질병 유행에 따른 관광 트렌드 전망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9년에 2020년과 2020-2024년의 기간 동안의 관광 트렌드를 전망함. 이론 인해 2020년에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를 고려하지 못함
 -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함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주요 피해 사항은 다음과 같음(관계부처 합동. 2020.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II』<2020. 3. 18.>)
 - (관광)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조치로 방한관광객·해외여행객 급감 → 관광업계 경영난 심화, 대량 실직 등 피해 심각
 - (시장) 3.14일 기준(누적) 방한관광객 약 201만명(△99만명, △33.0%), 국민 출국객 약 354만명(△285만 명, △44.6%)으로 대폭 감소
 - 외국인관광객 증가율(전년대비 %) : (1월) 15.3%, (2월) △43.7%, (3.1~3.14) △93.2%

- 해외여행 증가율(전년대비 %) : (1월) △14.5%, (2월) △62.3%, (3.1~3.14) △91.0%
- (업계) 여행·호텔업 휴·폐업 증가, 국제회의 등 연기·취소(128건)
 - 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1.29~3.12, 고용부) : 1,941개사(메르스 당시 297개사)
 - 평균 객실이용률(주요 7개 업체) : (1월1주) 70.7% → (3월1주) 5.6%(△65.1%p)
 - 유원시설 입장객 수(상위 3개 업체) : (1월3주) 194,214명 → (3월1주) 55,355명(△71.5%)
- 감염성 질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과 같이 관광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됨
 -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위생 정도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임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보다는 거주지 주변 한적한 곳을 방문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임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여행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 전세계적인 해외여행의 감소가 이루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의 방한도 줄 것으로 예상됨

제4절 섬 개발 저해 관련 규제현황 분석

1. 섬 개발 저해 관련 법규 개요

- 섬 개발을 저해하는 법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연안수역, 보존/보전, 시설/개발에 관한 규제로 구분지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함

【표 2-20】 섬 개발 저해 관련 법규 현황

구분		관련 법규
연안수역	해안선/연안수역	수산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골재채취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항만법(항만개발), 어촌·어항법(개발 및 관리),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보존/보전	환경일반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해양과학조사법
	자연·생태계 보존	습지보전법, 농지법(농지보전), 산지관리법(산림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환경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 보호	내수면어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해양자원보호), 방조제 관리법(간척지 보존, 농수산물 재해방지), 수자원보호령
	군사보호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방어해면법
시설/개발	시설/개발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상수원관리규칙, 도로법, 하천법, 광업법
	관광시설	관광진흥법(관광지, 호텔, 펜션,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온천법, 지하수법(온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골프장, 스키장)
	공원시설	자연공원법(국/도/군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자연휴양림), 노인복지법(실버타운), 청소년기본법(수련시설)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공연/문화시설)
	농어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촌정비법
	도서개발	도서개발촉진법

- 섬 개발 저해 관련 법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섬의 지목은 대부분 임야이며, 일부 농지와 대지, 접종지로 구성됨. 임야는 개인사용이 어려운 공익용보전산지인 경우가 많음 (※ 건축법 상 섬 안에서의 진입도로 요건은 완화되어 있음)
 - 많은 무인도가 경관지구, 해상국립공원 등으로 지정, 또는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
 - 섬은 야생동·식물 보호, 습지와 갯벌 보호 등 해양생태계보전구역의 제한을 받음. 그러나 섬의 습지 및 갯벌을 매립하는 사업이 지속되어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가기도 함
 - 섬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등록되고, 무인도서에 관하여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인도서로 지정·관리됨. 이 중 259개 무인도서(전라남도 106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섬에의 출입 및 개발·이용이 크게 제한받음
 -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많음
 - 국가영토인 해역방어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있음
 - 무인도의 절반가량은 개인 소유이지만, 법률적·지형적·거리적·경제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개발과 이용이 사실상 곤란하여 방치 상태에 있음

2. 섬 개발 저해 관련 법규 주요내용

- 섬 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건축법

-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법률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등 28개

의 용도로 분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 어떻게 건축을 규제하는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54

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기획 중 일부 기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갇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갇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데이터센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

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 ④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사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器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일 것
 -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유기사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 ⑤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이 들어설 토지의 이용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개발행위의 허가와 국토를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나누어 건축물 건축제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80조·제80조의2·제80조의3 및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
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
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
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따로 정한다.
 -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
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
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제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 마. 전기·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 바. 주택·근린생활시설
-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

- 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아. 삭제 <2016. 5. 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垓)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숲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건폐율·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자연공원법

-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 신고 또는 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를 받도록 하고 있음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행위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 ⑤ 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

-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하며,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지정·신고·등록(「관광진흥법」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 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에 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 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 ⑧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한정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7) 수산자원관리법

-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산자원관리법」은 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산지관리법

-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지관리법」은 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 진입로
 - 나. 현장사무소
 -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도서지역 및 도서 주변지역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행위제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7. 야생동·식물을 포획·살생·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지질·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특정도서에서의 행위제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증축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5. 입목·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10. 특정도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항해·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
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 가. 통제보호구역
 -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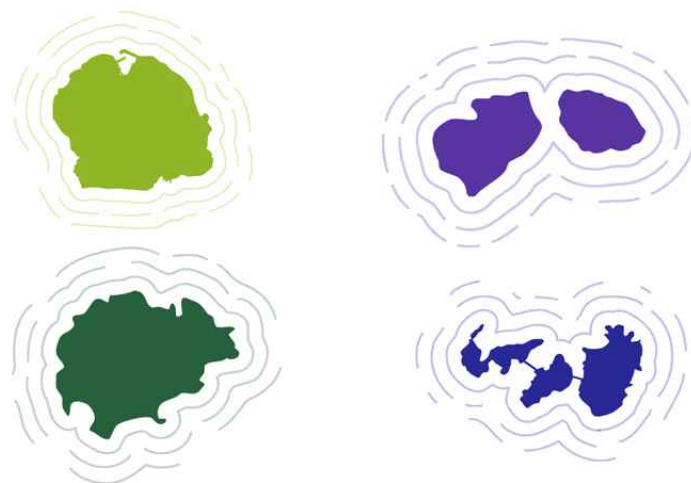
12) 기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습지보전법」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항만법」에서는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항만법」 제8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절 전라남도 섬 현황 종합 분석

- 우리나라는 섬이 많은 다도해 국가로 전라남도에 특히 많은 섬이 있음. 중앙정부와 전라남도는 「도서종합개발사업」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의 발전목표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섬」으로 정하였고, 수립방향으로는 「교통개선·관광활성화」와 「규제 완화」, 그리고 추진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육성」을 수립하여 섬에 대한 개발의지를 보이고 있음
-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을 통해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6개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소소한 여행,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지역 관광명소 발굴 및 소개, 나만의 여행 찾기, 봄비는 인기 여행지 보다 쾌적한 숨은 여행지 선호,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의 일상화 등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섬은 매우 걸맞는 관광지임. 특히,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성 질병의 유행과 맞물려 북적이지 않는 섬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섬 개발을 저해하는 법규는 수십여 개에 이름. 섬의 경관과 생태계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차원에서 일정 부분 규제 해소가 필요함. 특히,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섬 정책을 구현하고, 최근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가 반드시 필요함





제3장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제1절 섬 콘텐츠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제2절 섬 규제 해소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제3장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제1절 섬 콘텐츠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1. 섬 콘텐츠 국내 우수사례조사

1) 섬 콘텐츠 유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은 섬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 유형을 크게 관광자원, 환경여건, 콘텐츠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함
- 관광자원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관광시설로 구분이 가능하며, 환경여건에 의해서는 레저·레크리에이션, 보전관광, 생태보존관광, 영토전방형으로 구분되며, 콘텐츠는 정태형과 동태형으로 구분이 가능함
 - 콘텐츠는 장소제공형, 기반시설이용형, 관람형의 정태형과 체험형, 스포츠형, 테라피형의 동태형으로 활동성에 따라 재분류가 가능함

【표 3-1】 섬 관광 유형

구분	유형	특징
관광 자원	자연자원형	섬의 자연 속에서 휴양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행태
	문화자원형	섬내 어촌 생활문화와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관광활동
	관광시설형	인위적인 시설물을 도입하여 섬 관광 동기 부여
환경 여건	레저·레크리에이션형	친환경적 해양레저,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활동
	보전관광형	체험어장, 갯벌어장을 자연·인문적 개발로 안전하게 보호
	생태보존관광형	공식 보호지로 지정하여 인간의 개발이 없는 보존형
	영토전방형	영해와 경계수역의 설정기준으로 안보관광형 개별
콘텐츠	장소제공형	낚시터, 동굴, 어장 등의 장소 제공
	기반시설이용형	식당, 민박, 여관, 유어선 등 관광기반시설 활용
	관람형	유어선, 유람선 등을 이용하여 자연경관과 연안 관광
	체험형	잠수 도구를 이용한 각종 해산물 채취와 갯벌체험 등의 먹거리 행사와 문화행사 체험
	스포츠형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등 스포츠와 해변 트레킹
	테라피형	해수온천과 같은 테라피, 갯벌, 머드백 등의 휴양과 보양활동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섬이 관광으로 발전하려면 섬이 지니고 있는 6개 유형의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섬은 개별 섬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6개 유형의 콘텐츠를 전부 구현할 수 있는 섬도 있고, 1개 유형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아울러 위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섬 콘텐츠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개발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2) 「가고 싶은 섬」 선정 도서

- 우리나라에서 섬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발굴·개발한 사례로는 「가고 싶은 섬」을 들 수 있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12개 도서의 주요 개발 컨셉과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수 '낭만' 낭도(2015)

개발대상도서 유형 D-ii * 섬 도보여행의 일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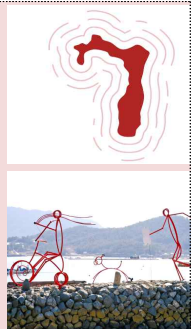
- 낭도 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폐교 리모델링 후 마을기업(숙소/식당) 운영
- 장사금 해변 '뜻밖의 도서관', 규포마을 어가 체험 공간 시설



■ 고흥 '연분홍 치마' 연흥도(2015)

개발대상도서 유형 C-ii *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 미술여행

- 국제 아트 페스티벌 개최('15.12~'16.5 공공미술 프로젝트)
- 섬 전체를 조형미술관으로 조성, 여객선을 움직이는 미술관으로 신조



■ 강진 '걷는 섬' 가우도(2015)

개발대상도서 유형 A-i *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서, 섬 둘레를 산책한다.

- 마을창고 재활용(부녀회 식당), 카페 가우나루(청년회 운영)
- 복개천 복원 천연 족욕탕 조성, 폐가 리모델링(어가 민박)



■ 완도 ‘노랑 무궁화’ 소안도(2015)

개발대상도서 유형 A- i * 다도해 최고의 뷰 포인트

- 미라리 펜션 리모델링(지열·태양광 도입), 특산물 판매장 건립
- 청년회관 리모델링(전복밥상), 노랑무궁화 육성장(식재 및 판매)



■ 진도 ‘솔숲’ 관매도(2015)

개발대상도서 유형 B- ii * 아이들은 생태체험을, 부모들은 트레킹을

- 섬 주민 이야기 스토리텔링 간판 설치, 관매 탐방로 정비, 매화길 조성
- 관매 폐교 관사 7동 리모델링(민박·식당), 우실* 복원 * 방풍 돌담



■ 신안 ‘노뎃돌’ 반월도·박지도(2015)

개발대상도서 유형 B- ii * 그 섬에서 사랑이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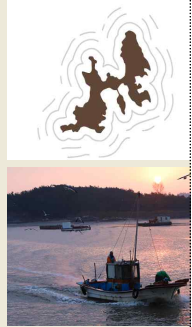
- 빈집 리모델링(숙박시설), 마을 경관 조성(꽃이 피는 섬마을)
- 빈집정비, 지붕채색, 돌담정비, 퍼플섬 조성



■ 보성 ‘꼬막섬’ 장도(2016)

개발대상도서 유형 A- i * 빨배가 있는 풍경

- 게스트 하우스 ‘장도의 집 운영’, 식도락 여행, 작은도서관(폐교활용)
- 섬마을 분교(야영장) 설치, 낚시체험, 탐방로(빨배길, 꼬막길) 정비



■ 완도 ‘햇섬’ 생일도(2016)

개발대상도서 유형 B- i * 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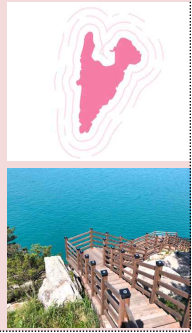
- 용출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일도 둘레길(서성~용출)조성, 생일밥상
- 탐방로 안내사인 설치, 금곡펜션 리모델링, 서성항 조형물



■ 여수 ‘꽃섬’ 손죽도(2017)

개발대상도서 유형 D-ii * 바다 위 한송이 섬마을 정원

- 댕머리공원, 북카페, 스토리문패, 가구별 꽃정원, 걷는길
- 이대원 동화책 발간, 손죽분교 캠핑장, 마을안길 ‘걷는 미술관’



■ 신안 ‘순례길’ 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2017)

개발대상도서 유형 A-i * 기적의 순례길

- 12사도 예배당, 복합센터, 브랜드·환경디자인 개발, 크린하우스
- 무인카페 겸 쉼터, 노둣길 복원, 유채·수국 경관단지



■ 완도 ‘돌담의 섬’ 여서도(2018)

개발대상도서 유형 B-i * 천년의 세월을 견뎌 온 돌담의 섬

- 돌담 산책로 및 섬 둘레길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여서도 커뮤니티센터 건립
-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 스토리텔링북, 홍보 리플릿 제작



■ 진도 ‘大馬를 잡았다’ 대마도(2018)

개발대상도서 유형 B-ii * 청년, 대마를 잡다

- 숙박시설과 카페 조성, 대마도 걷는길 조성, 추억의 포토존 조성
- 해안 인프라 조성(샤워장, 쉼터, 화장실 등), 시아시 습지공원 및 특화경관 단지 조성, 스토리문패, 꽃가꾸기



3) 시사점

-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도서는 규모가 소규모라 기존의 획일화된 규모가 큰 관광지 방문 지양하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관광지임
-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도서의 콘텐츠를 살펴보면, i 유형(농어업 중심)과 ii 유형(관광 중심)에 관계없이 개별 섬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하였다는 점

이 특징임. 선정 된 도서는 i 유형(농어업 중심)이 6개, ii 유형(관광 중심)이 6개로 섬의 기반이 농어업인지 관광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음

-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도서를 살펴보면, 육지와 가까운 A유형과 C유형이 5개, 육지로부터 먼 B유형과 D유형이 7개로 육지와 거리도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음
-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도서를 살펴보면, 인프라가 부족한 A유형과 B유형이 9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C유형과 D유형이 3개로 인프라는 섬의 콘텐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다는 것은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섬 콘텐츠의 발굴·개발에 있어 섬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의 해소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섬은 매우 다양하여 유형을 분류하여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움. 섬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점이 중요함, 단, 관광에 대한 기초인프라 구축 상태(문화 시설, 숙박시설 등)와 육지로부터의 접근성(연육교 유무 / 육지까지 선박을 통해 이동했을 때 소요되는 최소 시간)에 따라 타켓 시장을 선정하고, 타켓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와 주력 상품을 발굴·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A형 : 인프라가 부족하고 육지와 가까움 → 생활형 관광 추진
 - B형 : 인프라가 부족하고 육지와 멀 → 대상 선정 후 맞춤형 관광 추진
 - C형 : 인프라가 갖추어졌고 육지와 가까움 → 가족·연인 대상 생활형 관광 추진
 - D형 : 인프라가 갖추어졌고 육지와 멀 → 체류형 관광 추진

2. 섬 콘텐츠 국외 우수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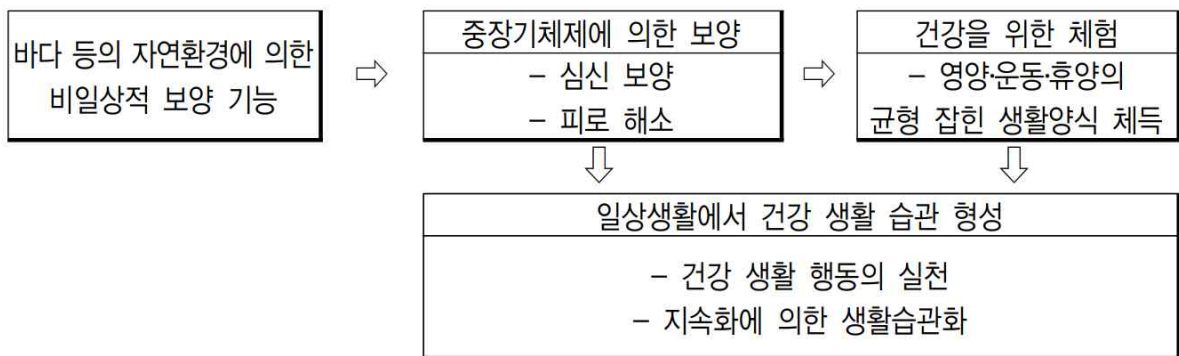
1) 일본 : 건강의 섬

(1) 개요

- 일본 아일랜드 테라피는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시 유행하고 있던 건강 및 웰빙과의 연계를 통해 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임
- 아일랜드 테라피 사업은 이도 지역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건강 보양을 주요 테마화 하여 사회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소프트사업을 진행하였음

(2) 주요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건강 보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섬 운영관리체계의 구축, 관광 산업 인력의 육성 및 활용, 관련 기반 시설의 정비 및 개선 등이 있음
- 건강 보양 프로그램은 교육적 요소가 강함.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으며, 섬의 유형(본토 근접형, 군집형, 고립대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그림 3-1】 일본 건강의 섬 : 건강 보양 프로그램 목적

■ 섬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개발

- 건강의 섬의 경우 각 섬이 획일화된 계획이 아닌 각 섬의 고유성 조사를 통한 건강이라는 큰 개념 아래 유형별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음
- 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고령화 및 환경오염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시도하였음

■ 지자체, 기업, 주민들의 협력 체계의 구축

- 나오시마 정장과 베네세 그룹 회장, 타 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쳐 섬의 방향을 결정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지역 문화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

- 기존 자연을 훼손치 않는 지속가능한 섬의 개발을 추구하였으며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 방식을 채택하였음
-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요소를 활용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및 상품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었음

2) 미국 : 아카디아 국립공원(마운트데저트 섬)

-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미국 대서양 연안상의 가장 높은 산인 캐딜락 산을 비롯하여 샌드비치, 절벽 해안, 호수, 숲 등 다양한 자연자원이 산재해 있는 미국의 국립공원임
- 아카디아 국립공원 내에는 Seawall과 Blackwoods 2개의 캠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 숙박시설은 공원 외에 형성되어 있음
- 국립공원 내에서 낚시, 하이킹과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나 자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수영과 같은 행위가 규제 중에 있으며 겨울철에는 차도가 폐쇄되는 대신 스노우 모빌이나 컨트리 스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민간과 정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보전 체계 마련

- 건강의 미국의 메인 주에 속하는 아카디아는 지리적 특성상 국립공원 지역이지만 계획적 관리를 바탕으로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지역 내의 자원에 대하여 보호 및 보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행하여 방문하는 이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고 재방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정부와 주민, 외부 전문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음



제2절 섬 규제 해소 국내외 우수사례조사

1. 섬 규제 해소 관련 법규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은 제주도를 모범적이며, 선도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를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핵심 산업을 육성하며,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권한과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주요 내용은 크게 행정구조 개편, 고도의 자치권 부여, 산업적 특례 부여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특례의 주요 내용 중 도서개발 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하여 제주도의 산업적 특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봄

【표 3-2】 제주도 핵심 산업 규제특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관광산업	• 출입국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외국 방문객 적극 유치 • 자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교육산업	• 초·중등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경제자유구역 이상으로 신장 • 외국의 우수 대학(원) 유치 여건 강화 • 국내대학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각종 지원 강화 • 국제 교육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 •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
의료산업	• 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완화 •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중심지로 육성 •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첨단산업	• 법인세 등 감면 대상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 • IT, BT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기회 부여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개발	• 토지이용·관리체계의 자율성 전면 부여 • 특별자치도내 도로 관리도 특별자치도로 전면 이양 • 개발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건설산업·측량업 등록 등 각종 건설규제도 일괄 이양하여 규제 철폐 여부·강도를 스스로 결정토록 위임 • 핵심산업 추진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기능 강화

(1) 관광산업

□ 휴양펜션업 등 숙박 관련 규제개선

- 휴양펜션업 제도의 신설(제174조의 1)
 - (현황)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휴양펜션업 제도를 신설하고,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관광진흥법 규정에 불구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등록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하도록 함
- 휴양펜션업 시설의 등록 사무 특례(제174조의 4)
 - (현황) 휴양펜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규제개선) 휴양펜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화
-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신청 절차 완화(제171조의 2)
 - (현황) 관광 편의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해야 함
 - (규제개선)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 17일에서 14일로 축소

□ 카지노 및 유원시설 관련 규제개선

- 허가가 필요한 유원시설업 지정 이양(제171조의 2)
 - (현황)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유원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제개선)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유원시설업의 지정
- 카지노업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신고 사무 이양(제171조의 2)

- (현황) 카지노업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규제개선) 카지노업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 신규허가의 제한 완화(제171조의 2)

- (현황)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27호 3항)
- (규제개선) 카지노업 허가는 외래관광객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신규허가 허용을 하였으나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외래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허용함(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7조제2항)

(2) 개발 분야 및 기타

□ 개발 관련 규제개선

○ 개발센터의 공무원 파견 요청 특례(제276조)

- (현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 공무원 근무 제한
- (규제개선) 개발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센터의 채권 발행 특례(제287조)

- (현황) 공기업의 경우 채권 발행에 제한이 존재
- (규제개선) 개발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상한 특례(제346조의 4)

- (현황) 지방공사의 출자상한선 존재
- 제주자치도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처분 기간 단축(제243조의 11)

- (현황) 건축물 건축(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등에게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규제개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도록 함(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 도시계획 관련 규제개선

○ 도시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제243조의 2 제3항)

- (현황) 도시계획시설(또는 그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첨부서류와 함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함
- (규제개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5년까지 허용(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지방공사 출자 상한 확대(제346조의 4)

- (현황) 자본금의 1/2((50%) 이상 출자 금지(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
- (규제개선)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및 증자 상한을 자본금의 100분의 70으로 확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제2조)

□ 환경개발 관련 규제개선

○ 초지법에 의한 공유지 대부료 산정 권한 이양 및 산정기준 인하(제주특별자치도법 제205조의 6)

- (현황) 공유지 대부료를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100분의 1)으로 정함(초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
- (규제개선) 공유지 대부료를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도조례(1,000분의 5)로 정할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법 제205조의 6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 제6항)

2) 도서개발 촉진법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서 수많은 도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없어 내륙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도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서를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국가의 지원 아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3호로 제정하였음
- 2019년 9월 21일에는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을 매년 8월 8일로 정하는 법 개정을 하였고, 2020년 6월 9일에는 개발대상도서(島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 개정을 하였음

(1) 주요내용

- (목적) 도서개발 촉진법은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지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제약이 있음
- 다시 말해, 도서지역의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의 행위 규정에 따라야 하다고 되어 있어 육지의 도시지역과 똑같은 규제를 받음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음
- 개발대상도서 지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도지사가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법령의 한계

- 도서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지만, 도서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서개발 에 필요한 인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개발 에 대한 권한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무총 리에게 보고하여야 확정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 다시 말해 자연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로 규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음

3) 기타 섬 규제 해소 사례

- (강원 고성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용 허용
 - (현행) A기업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이용하려 하나 「건강기 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이용 불가
 -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기능 성 원료로 신청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경남 거제시) 대체 진출입로 확보 시 공장입지 허용
 - (현행) 요트 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B기업은 해상운송을 통한 원자재 수송 및 납품을 위해 해안지역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육상 진출입로 확대가 어려워 공장입지 애로
 - (개선) 해상운송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진출입로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 하여 공장입지 허용
 - * (국토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 * (거제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장기대부(20년) 가능
 - (현행) 공장 및 연구시설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 허용
 - (개선) 공장 및 연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혜택 부여

○ 적극행정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개선

- (현행) 주민이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서류를 허가담당 부서에 제출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재 담당부서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원 신청 이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을 검토하여 문화재 조사유형(입회, 표본, 시굴, 발굴)을 결정하는 데 2주 이상 소요되고, 매장문화재의 분포도는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 상에 나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민원인에게 시간·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 (개선) 문화유적 분포지역 규제완화 검토용역 실시 후, 읍면지역 중 개발행위 빈도가 높은 6개 읍면에 대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현행화 및 보호방안 先 수립하여 인·허가 부서의 관련법 검토 요청 시 즉시 협의 처리하여, 전문가 자문료 및 기존 절차 중 20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함

2. 섬 개발 우수사례

1) 지역특구지정 사례

(1)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 수도권 내 접근성이 우수한 자연해안과 갯벌 및 오이도 패총 등 수도권 최대 규모의 선사유적을 활용하여 선사문화와 해안문화를 동시에 체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확대와 오이도 지역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특구지정 목적이 있음
-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는 3개의 특화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함



【그림 3-2】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표 3-3】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사업

특화사업	세부사업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 선사 유적지 보존·복원 사업 • 역사 체험공간 조성 •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역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 생태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안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	• 오이도 축제 활성화 • 오션 프론트 조성 • 웰빙-머드존 조성

○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 중 5가지 특례를 적용하여 추진된 사업임

-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43조(「장사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65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2)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 완도는 국내 최대의 전복(80%)·해조류(32%)생산지로서 향토 산업을 고차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 지정한 특구를 통합하여 변경특구로 바꿈
- 전복산업특구의 특화사업 3개와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의 특화사업 2개를 더하여 5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 규제특례로는 국·공유재산 특례, 특허, 지방재정, 옥외광고물, 식품표시광고 등 5개 분야였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 특례를 추가하여 총 6개의 특례를 적용받음

(3)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 서귀포는 구도심권 중심의 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예술스포츠 체험 공간제공 등을 통해 관광객 증가로 지역소득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를 지정 받음

【표 3-4】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사업

특화사업	세부사업	대상지역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작가의 산책길 • 문화예술시장 운영 • 서귀포 문화관광예술축제 개최 •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 • 서귀포예술의전당 건립	구 도심권 일원 (서귀동, 서흥동) 서귀포예술의전당 (서흥동)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 웰니스, 메디컬, R&D 파크 조성	헬스케어타운 (동흥동, 토평동)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	•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 • 한류스타 팬미팅 대회 •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 신축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	강창학구장(강정동) 월드컵경기장(법환동) 공천포전지훈련장(신례리)

- 규제특례로는 출입국관리법 특례,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등 총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음

2) 국내 섬 개발 사례

(1) 거제 외도 보타니아

- 경남 거제시에 속하는 외도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 아열대 식물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인근에는 해금강이 있어 주요 관광자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1974년 이창호·최호숙 부부가 섬을 산 후, 여러 용도로 개발 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시기로서 후에 식물원을 구상하게 되면서 도서개발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1995년 외도해상농원으로 개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고, 2000년에는 한국관

광대상 우수상을 시상하기도 하였음

- 2007년 8월에는 외도 누적 입장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였고, 2017년 10월에 2천만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음



【그림 3-3】 외도 보타니아 안내도

- 외도 보타니아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0분 정도이며 섬에 머무르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정도임
- 접근 수단은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인근 거제 해금강과 학동 몽돌해수욕장 등의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음
- 외도 보타니아는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시설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기후를 이용한 아열대성 식물군을 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섬 자체를 공원화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외도 보타니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서개발 관광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2) 신안 증도 옐도라도 리조트

- 증도 옐도라도 리조트는 2006년 4월에 개장하였으며, 39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건설된 것으로 이 지역의 대표 관광시설로, 주요시설은 숙박시설과 골든베이, 골든 히르 골든 비치 등의 3개의 부대시설이 있음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의 「증도 갯벌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갯벌생태학습공원과 휴양촌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신안군은 리조트 조성을 통한 갯벌생태전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증도 갯벌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신안군에서 추진한 갯벌생태전시관과 민간투자로 진행된 옐도라도 리조트 개발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3-4】 증도 옐도라도 리조트 안내도

- 특히, 증도는 2007년 12월 전남 완도의 청산도, 담양 창평, 장흥 유치 등과 함께 아시아 최초의 “치파슬로”로 지정되었는데, 치파슬로(citta slow)는 영어 슬로시티(slow city)의 이태리어 표현이며, 슬로시티란 느리게 살기를 추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급하게 사는 것보다 천천히 살며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

하는 도시를 의미함. 신안군 증도 일대는 뛰어난 경관과 온대 식생,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새들의 중간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등 이미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5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서해안 다도해와 기암절벽위에 그려놓은 고품격 해양별장

사방이 탁 트인 옐도라도 리조트는 모든 객실을 최상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오션뷰(Ocean-view)형태로 배치 하였으며, 위치하는 지형의 특색에 맞도록 트렌디 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총 5가지 타입의 해양형 빌라(Villa)로 구성됩니다.

- 십리가 넓게 펼쳐진 우전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위치한 Longbeach Villa(롱비치빌라)
- 깎아지른듯한 기암절벽 위에 확 트인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Oceancliff Villa(오션클리프빌라)
- 서해안 금빛 바다의 아름다운 낙조가 드리우는 Sunset Villa(썬셋빌라)
- 두 개의 해안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만과 모래사장 앞에 위치한 Beachfront Villa(비치프론트 빌라)
- 푸른 잔디의 화훼공원과 다도해의 풍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Sky Villa(스카이빌라)

- 리조트 근무자를 지역주민으로 고용하여 지역고용창출은 물론 지역특산품 판매, 각종 지방세 납부 등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리조트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증도 지역의 각종 체험관광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3)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으로 통영시 남단 18km에 있는 산양읍 연곡리에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9억원(국비 39억원)을 투자한 이 사업은 화석에너지 제로 섬, 생태관광, 마을기업 할매공방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 13억2,000만원(국비 10억5,600)을 투입해 연대도와 만지도를 잇는 출렁다리(L=98.1m) 조성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추진하여 에코아일랜드 조성과 출렁다리 개통으로 통영시 연대지구 방문객은 1년 만에 160%나 증가했고 국내 14번째 명품마을(국립공원)에 선정되는 등 ‘느리고 편안한 가족 힐링의 섬’으로 조성하는 국

비(20억) 사업까지 확보하였음

- 화석 에너지 사용 제로의 섬으로서 전세대가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33층에 이르는 다랭이 밭에 다양한 꽃을 분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 폐교를 이용하여 에코 아일랜드 체험센터로 재생하여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섬 국화차, 민들레차 등 마을 특산물을 콘텐츠로 하는 마을기업(할매공방)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있음
- 주민 어선을 활용한 내방객 도선료 수입 창출, 에코 아일랜드 체험센터 운영 수입, 공공 근로 상시고용, 직영 음식점 수입 등 주민들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 사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외부 유출이 차단되어 직접 주민들에게 환원됨으로 사업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4) 완도 청산도 「가고 싶은 섬」

- 청산도는 전남 완도군에서 남쪽으로 19.2km 지점에 위치한 다도해 최남단 해역에 위치함 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2,502백 만원을 투자되었음
- 청산도는 Five Zero(쓰레기, 에너지, 자동차, 전봇대, 아스팔트)의 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로화 한다는 목표 하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
- 미항 도청 만들기, 마을정비사업, 공원조성 정비, 관광기반시설 구축, 친환경 활용 프로젝트 사업 등의 하드웨어 사업과 농어촌 체험관광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산도 생태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급, 청산도 팸 투어 프로그램, 워크숍 및 사업 모니터링,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섬 내 친환경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산도 개발 사업 이후 2012년 관광객이 10만명 이하에서 4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증가로 주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짐

3) 국외 섬 개발 사례

(1) 그리스 산토리니섬

- 산토리니섬은 화산섬으로 이로 인하여 현재도 화산분화구, 온천, 레드 비치 등과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 그리스 섬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산토리니섬은 기존 자연자원 이외 카톨릭 성당, 교회 등 역사 문화 자원 등을 관광 자원화 하였으며, 지역 특산물인 포도주의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다른 섬 지역과 다르게 대규모 관광 시설이 없음에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였음



【그림 3-5】 그리스 산토리니섬

- 흰색과 파란색을 주요 색상으로 하여 일년에 1~2회 주택을 페인트로 도색하는 등 건축물의 색채 및 높이, 창문의 형태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경관 조성을 유도하고 있음
- 산토리니섬은 기존의 타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인공적인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가 아닌 지역 고유의 자원과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그리스의 섬 내에서도 명품화에 성공한 케이스임
- 추진 정책
 - 섬 고유문화의 관광 상품화 : 과거부터 유지되어 오던 산업을 이용한 기념품 및 주방용품, 예술품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 지역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으로 판매
 - 지역주민과 연계한 관광 개발방식의 추진 : 지역 사회가반형 관광개발 방식 추진

을 통한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창출을 유도

-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 : 섬 연계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다양한 접근 수단 강구

(2) 이탈리아 카프리섬

- 카프리섬은 이탈리아 남부지역에 위치하며 캄파니아주에 속하는 지역으로 섬 전체가 용암으로 뒤덮여져 있으며 해양생태자원 및 온난한 기후로 인해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해짐
- 연간 관광객 수가 약 300만명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로서 이중 약 75% 이상의 관광객이 체류형 관광객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6】 이탈리아 카프리섬

- 카프리섬의 주민 1인당 연간소득은 이탈리아 본토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이는 관광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임
- 추진 정책
 - 역사자원의 관광 자원화 : 고대 로마시대의 황제 별장을 비롯하여 주변의 나폴리, 폼페이 등과 연계한 크루즈 및 항공 관광 등을 통해 단순한 섬 관광이 아닌 다양한 패턴의 관광을 방문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높은 체류기간과 재방문율을 보이고 있음
 -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 육지와 연결되는 상하수도의 조성을 통하여 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처리함으로써 섬의 쾌적함을 유지

- 강력한 규제를 통한 어메니티 창출 : 카프리섬은 고대 역사자원의 보존과 자연자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새로운 관광요소를 창출하고 있으며, 섬의 경관과 관련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 규제를 통해 섬의 경관 자원 보존에 노력하고 있음
- 다양한 연계 교통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의 개선 : 카프리섬과 육지와의 접근성에 대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3) 일본 나오시마섬

- 나오시마섬은 1917년 중공업 단지가 건설된 이후 약 70년간 그로 인해 유발되는 공해 때문에 섬은 황폐화되고 인구 또한 급감하였으나, 1989년 문화의 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일본의 대표적 교육기업인 베네세 그룹의 전신인 후쿠다케 출판사의 대표가 사회환원 차원에서 어린이 캠프장을 설치하였고, 1992년 복합 문화공간이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의 개장을 시작으로 건축 및 미술품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음
- 주요 프로젝트
 - 집 프로젝트, 아이러브유 프로젝트, 새토우치 국제예술제 등이 있음
- 집 프로젝트는 기존 주민들의 이도현상에 따라 발생한 빈집에 대하여 예술작품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주민과 예술가 등의 협력을 통하여 진행됨



【그림 3-7】 일본 나오시마섬

- 아이러브유 프로젝트는 목욕과 관련된 여러 물건을 이용해 목욕탕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일본 고유의 문화요소를 관광자원화에 성공하였음

- 새토우치 국제예술제는 나오시마섬을 비롯하여 인근 7개 섬에서 열리는 국제예술제로 외지인들에게 섬의 매력과 지역민들에게 활력 유발을 목표로 하는 행사로 추진함

(4) 싱가포르 센토사섬

-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마련을 목적으로 센토사 섬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함
 - 본래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의 해양 휴양지 중 하나였지만, 미개발 상태로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았던 지역임
 - 2000년대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 관광객 증가세 둔화 및 서비스업 성장의 필요성에 따라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이에 따라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센토사섬을 개발함
- 싱가포르는 두 개의 복합리조트가 동시에 개장하여 카지노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공한 이후 타 사업의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
 - 성격이 상이하면서도 카지노를 포함한 두 개의 복합리조트가 각각 센토사섬과 도심에 동시 개장하였으며, 해외 카지노 자본이 투자 및 운영함
 - 센토사섬은 호텔, 테마파크, 해양공원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로 카지노는 복합리조트 초기 운영의 캐시 카우 역할을 담당함
 - 개장 초기에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의 초기 성공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테마파크 등 기타 사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함
- 싱가포르 관광 시장의 성장과 관련 고용의 증대, 싱가포르 관광 상품의 다양화 등과 긍정적 결과가 발생함
 - 복합리조트 개장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관광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관광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직간접적 고용 효과 역시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함
 - 특히, 과거 싱가포르는 쇼핑 외에 특징적인 관광 상품이 부족했지만, 복합 리조트의 개장을 통해 관광 상품이 다변화됨
- 카지노 사업 경험을 가진 해외 자본의 투입과 운영 참여, 개장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개장과 동시에 성과를 창출함

- 센토사 섬을 포함한 싱가포르 복합리조트들의 핵심 성공 요인은 내외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 사업의 운영임
- 특히, 대형 카지노 호텔 및 리조트 운영 경험을 가진 해외 자본의 투자 및 운영으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함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 회복 시점에 개장하면서 해외 관광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 점 역시 성공 요인 중 하나임



【그림 3-8】 싱가포르 센토사섬

(5) 시사점

-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 해결에 있어 다양한 접근 수단(페리 및 정기여객선 등)의 활성화를 통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구하고 있음
 - 국내 섬의 경우는 연육교, 연도교, 해저터널 등의 건설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섬이 가진 매력성을 반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서개발을 육지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위한 기반 인프라 시설 조성 및 문화예술과 건강과 같은 특정 테마를 소재로 하는 개발이 병행되어 추진되었음
 - 나오키섬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추진과 지역주민, 기업의 협의를 통해 섬의 정책 방향을 정하였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음

-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전담 기구 또는 특별기구 신설을 통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국내의 경우는 각 부처별 사업(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의 유사성 또는 중복 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표 3-5】 국외 섬 개발 우수사례 시사점

구분	내용
그리스	• 개발보다는 자연환경, 문화 보전을 최우선으로 함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추구
이탈리아	• 개발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섬 관광개발을 추진 • 자연경관의 관리 및 보전에 집중 •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일본	• 지자체, 기업, 주민들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문화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
싱가포르	• 기존 관광 상품 외 관광 상품의 다변화로 추진 •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한 개발



제4장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발전 구상

제1절 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제2절 섬 규제 해소 방안 제시

제3절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제시

제4장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발전 구상

제1절 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1. 섬 콘텐츠 개발

- 섬은 앞장에서 설명하였지만 섬은 다양하여 획일적인 콘텐츠 제시가 어려움. 본 과업에서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또한 전라남도 섬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시함. 본 콘텐츠를 토대로 개별 섬의 여건에 맞추어 변형할 필요가 있음

1) 전남 섬 캠핑장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 ▣ 섬에서 즐기는 캠핑. 산과 계곡과는 차원이 다른 캠핑
- ▣ 체계적인 섬 캠핑장 조성과 관리 추진

- 최근 캠핑이 인기를 얻자 많은 지자체에서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산과 계곡 근처에 개발하고 있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섬에서 즐기는 캠핑은 바다가 있어 산과 계곡과는 분명히 차별성을 지님
- 특히, 캠핑장 조성은 각종 규제를 피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함



【그림 4-1】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캠핑장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 캠핑장 인근에서 섬 낚시, 스쿠버다이빙, 배 유람 등의 상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것임
- 캠핑장 조성 후에는 전남 섬 캠핑장에 대한 통합 관리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캠핑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 국립공원공단의 예약통합시스템 등 벤치마킹 실시



【그림 4-2】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 운영

2) 전남 섬 캠핑요리 개발 및 보급

- ▣ 전남 섬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섬 캠핑요리 개발 및 보급
- ▣ 전남 섬 캠핑요리 상품화 추진

-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과 섬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한 전남 섬 캠핑요리를 개발함
 - 상품 개발과 레시피 개발 및 보급도 병행함
 -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전남권 대학 식품영양학과와 로컬푸드 공동개발 추진
 - 전략적으로 백종원 등 유명 요리가와 함께 로컬푸드를 개발하여 인지도를 올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과 계곡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섬 캠핑과 싱싱한 바다음식으로 캠핑족 유입 확대를 추진함



【그림 4-3】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캠핑요리 개발 및 보급

「참고 : 전북 완주군 -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은 농산물직매장, 농가레스토랑, 가공체험센터, 농촌여행버스 등 6 차산업의 대표사례로 초창기에 약 40억원 투자
- 완주군과 농축협이 공동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주)완주로컬푸드에서 운영
- 모악산 지점은 한식뷔페를 함께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완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



3) 전남 섬 야간 특화축제 개발

- ▣ 전남 섬. 축제가 있어 밤이 더 즐겁다.
- ▣ 바다의 영웅, 섬의 전래 이야기를 등불로 승화시켜 섬의 낭만을 창출

- 바다와 접하고 있어 섬은 화재 위험이 적음. 야간에 등불을 이용한 특화 축제 개발이 용이함
- 바다와 관련된 영웅 이야기, 섬의 전래 이야기 등을 테마로 하여 등불 날리기 축제를 개최함



【그림 4-4】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야간 특화축제 개발

「참고 : 폴란드 포즈난 등불축제」

- 폴란드어로 ‘NOC KUPAŁY(노츠 쿠파위)’라 불리는 풍등축제는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풍등축제임
- 1년 중 밤이 가장 짧은 날에 열리는 이 축제는 슬라브족의 전통에서 유래되었으며 약 1만 5천개의 풍등을 동시에 날려 세계에서 가장 풍등을 많이 날린 축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음



「참고 : 한강이불영화제」

- 한강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하며 야간에 가족, 연인, 친구가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제임
- 총 300여개의 미니 풀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영화제 인근엔 푸드트럭이 있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



2. 섬 콘텐츠 홍보

- 전라남도 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제시함

1) 전남 섬 12경 선정

- ▣ 전남 섬 12경을 선정하여 전남 섬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
- ▣ 도민의 참여를 통해 12경을 선정하고, 3년마다 재선정 실시

- 전남 섬의 명소화를 위한 전남 섬 12경 선정이 필요함
- 도민의 참여를 통해 12경을 선정하고, 3년마다 재선정하여 경관보호와 관광객 유치 경쟁을 유도함
- 선정과정을 통해서 전남 섬 주민의 일체감을 확립함
- 단순한 12경의 선정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12경 선정 시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
- 전남 섬 12경 선정과 더불어 대상지 홍보 및 정비를 실시함



【그림 4-5】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12경 선정

「참고 : “용인의 아름다움을 맞보세요”... 용인시 신 용인 8경 선정 (한국일보 2019.09.25)」

용인시는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용인농촌테마파크를 포함한 신(新) 용인8경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용인8경은 제1경 석성산 일출(동백동) 제2경 광교산 사계(신봉동) 제3경 기흥호수공원(공세동) 제4경 용인농촌테마파크와 연꽃단지(원삼면) 제5경 용인자연휴양림(모현읍) 제6경 조비산 조망(백암면) 제7경 가실벚꽃(포곡읍) 제8경 어비낙조(이동읍) 등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치 좋은 관광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자문단의 현장답사와 관광수요 분석 등을 거쳐 상징성과 대표성, 경관의 우수성 등을 고려해 이들 8경을 선정했다. 시는 성산 일출이 제주도 성산일출봉과 혼돈 우려가 있어 석성산 일출로, 광교산 설경은 특정 계절을 지칭하고 있어 광교산 사계로, 조비산은 조망 위치가 변경돼 조비산 조망으로 명칭을 바꿨다. 가실 벚꽃과 어비낙조는 그대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새로운 용인8경을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거점별 관광코스로 개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들 명소를 소재로 전 국민 대상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용인8경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사진을 1인당 2점씩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www.yongincontest.com)를 통해 하면 된다. 우수작 16점을 선정해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 총 750만원의 상금을 줄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연간 1,2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 용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 용인8경을 선정했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용인의 아름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관광코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 전남 섬 캐릭터 상품 개발

- ▣ 전남 섬의 랜드마크, 전래 이야기, 특산물 등 섬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을 선정
- ▣ 전남 섬을 대표하는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

- 전남 섬만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필요가 있음
- 전남 섬을 대표하는 관광홍보 마스코트로서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 캐릭터 인지도를 강화시킴
- 전라남도에 소재한 관광안내소 등에 캐릭터 상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판

매처를 넓힘. 온라인 판매도 추진하며, 상품도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남 섬에 대한 유
행을 만들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캐릭터 상품을 제작 및 유통하도록 하고, 전라남도도 캐릭터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추진함



【그림 4-6】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캐릭터 상품 개발

「참고 : 日지자체 캐릭터 '구마몬' 활용상품, 작년 매출 1조5천억원 (연합뉴스 2019.03.05)」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캐릭터가 연간 1조5천억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NHK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은 이날 홍보캐릭터 '구마몬' 관련 상품의 매출이 작년 1년간 1천500억엔(약 1조5천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마몬은 곰을 뜻하는 일본어 '구마(熊)'와 사람이라는 의미의 구마모토 지역 사투리 '몬'을 합쳐 이름을 지은 흑곰 캐릭터다. 지난 2011년 제작된 뒤 인기를 끌었고, 특히 2016년 4월 구마모토 인근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뒤에는 재난 극복의 상징 역할을 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은 매년 구마몬 관련 상품의 매출 통계를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한 수치는 작년보다 6.8% 늘어 캐릭터 탄생 후 가장 컸다. 구마모토현은 현의 허가만 받으면 캐릭터 사용료 없이 구마몬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 구마몬을 활용한 과자 등 식품의 매출은 1천242억엔(약 1조2천496억원)에 달했으며 인형 등의 캐릭터 상품의 매출은 244억7천만엔(약 2천562억원)이었다. 구마모토현은 일본 밖 기업들도 구마몬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관련 상품 매출은 42억엔(약 423억원)이었다.

3) 전남 섬 홍보 유튜브 경진대회 추진

- ▣ 지역 관광명소를 발굴, 소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성장
- ▣ 전남 섬 홍보 유튜브 경진대회를 통해 홍보 일상화/상품개발 추진

-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홍보에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전라남도가 주관하여 유튜브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유튜버들이 섬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함. 다음과 같은 주제로 경진대회를 개최함
 - 내가 아는 전남의 섬 :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전남 섬의 구석구석을 발굴하여 홍보 (※ 인천광역시의 경우, 드라마 ‘별그대’의 촬영지인 폐채석장을 관광 콘텐츠를 발굴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
 - 전남의 섬. 이렇게 즐겼다 : 전남 섬을 방문하여 즐기고 체험하는 영상을 제작·홍보



【그림 4-7】 관련 이미지 : 전남 섬 홍보 유튜브 경진대회 추진

「참고 : 드라마 ‘별그대 콘텐츠’로 인천관광 대박행진 이어간다 (국민일보 2015.01.08)」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SBS 드라마 21부작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내 열풍이 계속되면서 드라마 주요 촬영지였던 인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데 이어 국내 관광시장에서도 인천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별 그대 콘텐츠’가 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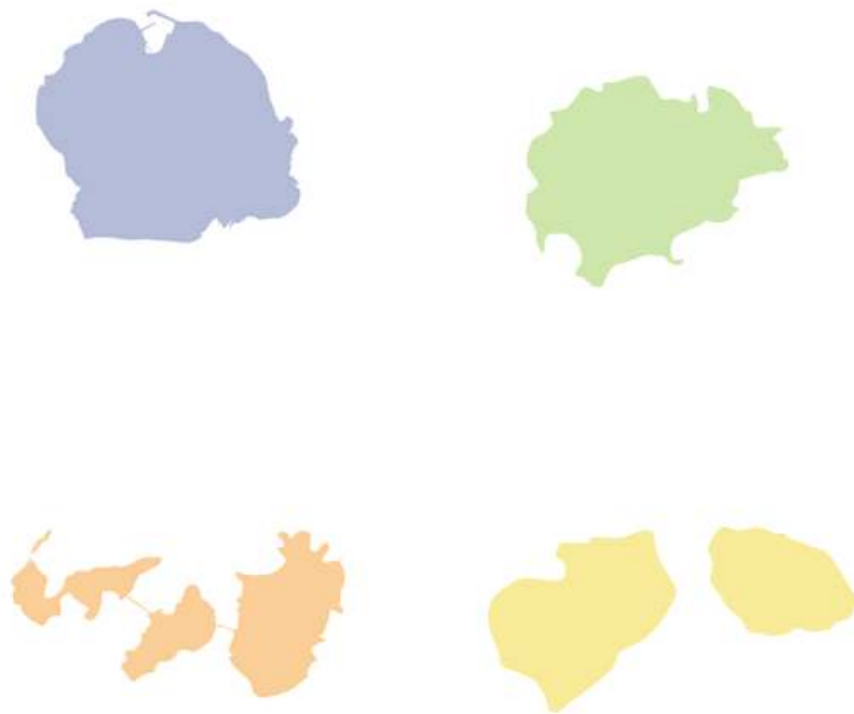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주)비에스관광개발과 함께 내국인을 대상으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요 촬영지였던 송도석산과 인천의 관광명소를 함께 즐기는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 성공했다. 송도석산은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되다가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곳이지만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었던 도민준(김수현 분)과 천송이(전지현 분)가 시대를 초월한

운명적인 만남을 반복하는 중요한 배경지로 등장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시는 드라마가 종영된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인 송도석산 환경 정비와 드라마 체험 공간 마련을 통해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췄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 사랑의 징표로 등장했던 ‘비녀’를 관광 기념품으로 개발해 송도석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랑의 맹세와 함께 비녀를 걸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마련하는 등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해 57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의 송도석산 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는 4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과 1만여 명의 일본인 관광객의 인천 방문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속 휴물로 방치되었던 공간에서 인천만의 문화역사적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해낸 성공적인 관광개발 사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관광객들의 열띤 반응에 힘입어 추가적으로 개발된 이번 국내 관광상품은 ‘천도절벽’이라 불리는 송도석산 외에도 인천의 전통적 관광명소인 차이나타운과 소래포구, 월미도 등 관광일정도 포함하고 있어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2절 섬 규제 해소 방안 제시

1. 각종 규제 해소 방안

- 도서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있어서 현행법상 규제에 의하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적 절차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도서지역의 개발행위에 있어서의 규제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과업은 섬 특구 지정에 대한 규제특례를 대상으로 하기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수산자원관리법

□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전라남도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중 해안오염이 없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묶여 있어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창출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과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민간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에 의해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동법 시행령 [별표 16]에 제시되어 있음. [별표 16] 중 제2호 ‘카’항에는 설치가능 한 숙박시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 2)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숙박시설의 개발 행위제한에 대하여 지역특구법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특구법이 개정된다면 특화사업에 한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최대

150%까지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됨

【표 4-1】 지역특구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현행	개정(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략	①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16 제2호 카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항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u>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관광(단)지로 지정이 안 된 곳에서는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하고, 일반음식점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방류수질기준: BOD 10ppm 이하)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나, 음식점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처리장과 같은 방류수질 기준으로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축이 불가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저해되고 있음
- 하수도법 제2조 제9호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처리하수시설에 대하여 지역특구법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특구법이 개정된다면 특화사업에 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장과 같은 방류수질 기준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가 의제 처리됨

【표 4-2】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 [1]

현행	개정(안)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9 생략 ② ~ ⑦ 생략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수도법 제2조의9에서 규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수질기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2) 자연공원법

□ 제18조(용도지구)

- 자연공원법 제18조에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위제한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신안군 흑산도 권역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흑산공항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나, 배후지역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함
- 진도군 남동지역(임회면)은 서남해안 물류 거점과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묶여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원자연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일반음식점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음
- 공원구역에서의 공항건설 등과 같은 개발 행위제한에 대하여 지역특구법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특구법이 개정된다면 특화사업으로 인한 공원 해제 및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표 4-3】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현행	개정(안)
① ~ ②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3.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른 자연공원 지정해제 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행위허가)

- 자연공원법 제23조에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원구역 내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섬마을 정주환경 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임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마다 공원행위허가(협의)를 통하여야 함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지역특구법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특구법이 개정된다면 특화사업에 한하여 공원구역 내 공원사업 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원구역 내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섬마을 정주환경 정비사업 등을 특구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면 지역특구법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표 4-4】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 [2]

현행	개정(안)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9 생략 ② ~ ⑦ 생략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표 4-2]에서 신설) 21. <u>자연공원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허가</u> ② ~ ⑦ 현행과 같음

3) 국유재산법

□ 제27조(처분의 제한)

- 국유재산법 제27조에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보령군은 관광객 및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경선착장, 부수 선착장 주변의 환경 개선 및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음
-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13호에는 특화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 허가)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선착장 인프라 구축사업을 특구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하고 있음
-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업기반 정비사업 등 사업대상지가 공유수면이 대부분이며 사업 시행 전 해역이용협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지역특구법 제65조 제1항 제7호에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동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의제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조(적용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해남에서 추진 중인 녹도개발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역특구법 제59조에 의하여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2. 특별법 제정 방안

-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316개의 특별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음
- 섬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되지만, 섬 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서개발 촉진법이 있으나 개발행위에 있어서 현행법상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서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의 규정은 없음
- 따라서 효과적인 도서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칭)도서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명함
- 「도서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각각의 조문에 대한 규정은 현행 법 제정 목적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에서 조문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도서개발에 있어서 현행 법의 규제보다는 보다 완화되어 개발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도서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27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조 목적	제28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9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장 도서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제31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4조 기초조사	제32조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33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6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34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제3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8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36조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9조 제한적 토지수용	제37조 국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제38조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제11조 조세의 감면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1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0조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 특별개발우대사업	제41조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42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43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16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제4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17조 공유수면 사용 및 점용에 관한 특례	제45조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제18조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제46조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47조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제20조 관광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제48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제21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제49조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5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3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장 벌칙
제2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제51조 과태료
제25조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고발 및 통고처분
제26조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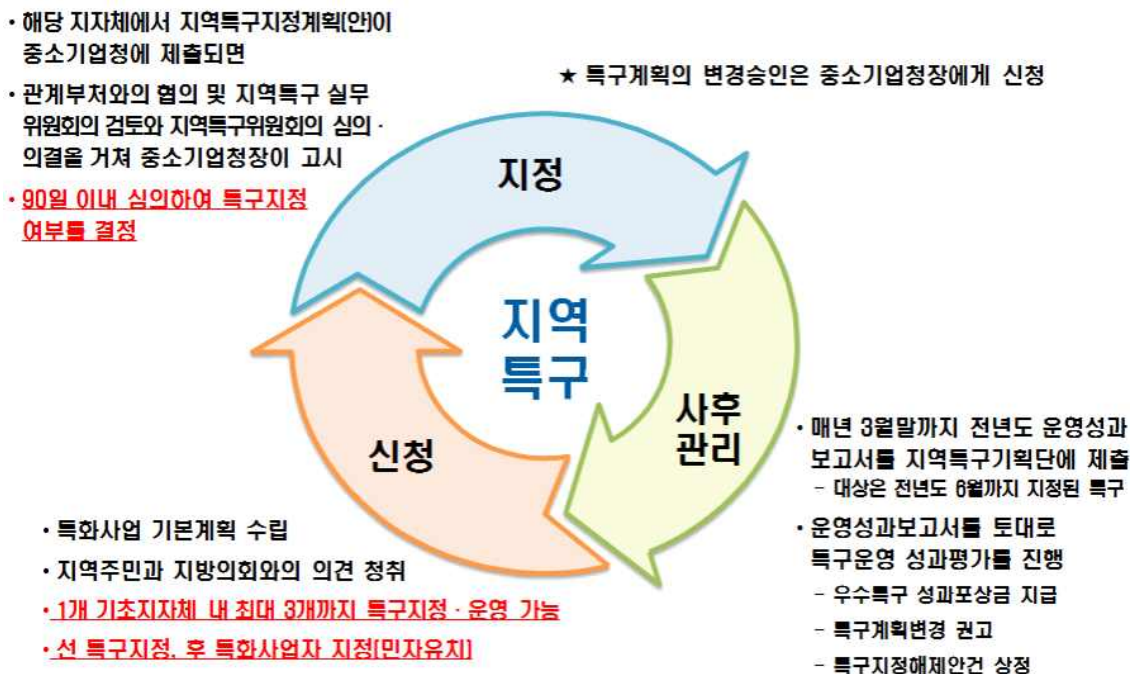
제3절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제시

1. 지역특구제도

1) 특구 개요

(1) 도입과 경과

- 일률적 규제와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략의 요구가 지역특구 도입이 필요한 배경이고, 중복투자 및 사회적 낭비 방지, 지자체의 자발적 개발 유도, 규제특례를 통한 규제개혁 등의 취지를 제시하며 도입하게 됨
- 2003년 제도 도입 결정과 준비를 거쳐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2008년(재정경제부→지식경제부), 2013년(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총2회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위상의 변동이 있었음



【그림 4-8】 지역특구제도 운영체계

- 지역특구 제도는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조세 또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역특구 제도는 규제특례 이외의 재정 세제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특구, 관광특구 등의 타 유사제도와 구별됨

(2)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 현황

-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020년 5월 현재 총 214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16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198개 특구가 운영 중임
- 유형별로는 향토자원유통 (91개, 46.0%), 관광·레포츠(48개, 24.2%), 교육(33개, 16.7%), 산업연구(21개, 10.6%), 의료·복지(5개, 2.5%) 등임

【표 4-5】 지역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계	향토자원 유통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198 (100.0%)	91 (46.0%)	48 (24.2%)	33 (16.7%)	21 (10.6%)	5 (2.5%)

- 지역별로는 전남 38개, 경북 28개, 경기 19개 순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 4-6】 지역특구 지역별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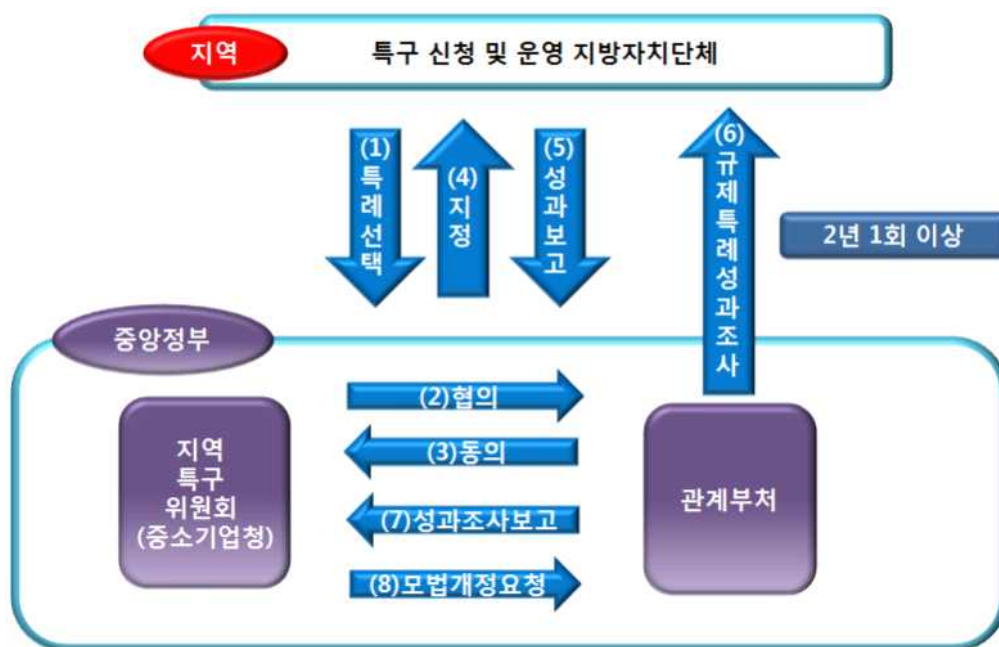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	13	7	4	3	3	1	2	19	14	15	19	14	38	28	15	3

(3)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

- 2004년 특구법 제정 당시 35개 법률 68의 규제특례가 도입된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특례 추가되었고, 2020년 2월 지역특구법으로 개정됨
- 2020년 2월 현재 58개 법률 128개 규제특례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특구법 제2장 제1절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제2절에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 규제완화 유형은 특구계획 포함시 인허가 의제 등 절차 간소화, 우선처리 혜택, 자자체로 권한 위임, 규제의 완화 또는 예외 적용 등임
- 그러나 일부 규제특례는 모법과 절차상 크게 차이가 없거나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등 특례로서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나타남



【그림 4-9】 지역특구 규제특례 운영체계

2) 국내 유사제도

- 지역특구 외 유사한 제도로는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교육국제화특구, 관광특구 등이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 목적으로,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과 토지 이용, 외국기업 유치와 편의를 위한 규제특례를 지원함
- 연구개발특구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 등을 지원, 국가기술 혁신을 위해 세제 혜택과

토지 이용, 허가 등의 의제 관련 규제특례를 지원함

-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주 목적으로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교육, 권한위임 등의 규제특례를 지원함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 목적으로 재정 지원, 영업제한 완화, 토지 이용 관련 규제특례를 지원함

(1)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

□ 개요

-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임
- 국제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물류 중심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 주요 내용

-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세제 혜택,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함
- 공항·항만·오피스 시설과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함
- 각 특구마다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청을 구성하여 운영함

□ 지정절차

- 광역자치단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지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 지사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함
- 현재 전국에서 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 세제 혜택

-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재산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 줌

□ 규제특례

- 규제특례 내용이 지역특구와 가장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토지이용 등 개발과 관련한 규제특례가 지역특구를 제외한 타 제도에 비해 많으며, 또한 외국인(기업) 유치와 편의를 위한 규제특례가 많은 것이 주요한 특징임
-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농지 전용, 인가·허가 등의 의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상한 특례 등이 지역특구와 공통적인 규제특례에 해당함

(2) 연구개발특구

□ 개요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설치함

□ 주요 내용

-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함
- 연구특구진흥재단이 운영, 관리를 담당함

□ 지정절차

-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정요건 해당 및 특구지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공청회)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를 지정함
-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은 지역특구 규제특례와 형식은 유사하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지역특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근로기준법 등 9개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음·진동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전국에서 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 세제 혜택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제14조), 외국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자금 지원(제24조) 등의 규정이 있음

□ 규제특례

- 연구개발특구는 토지이용 규제특례와 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된 규제특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특구 규제특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지역특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대부,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 의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임
- 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된 규제특례는 초지법 등 29개 법률에 대한 허가 고시 공고 등의 의제로, 지역특구법과 유사한 형태임

(3) 교육국제화특구

□ 개요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설치함

□ 주요 내용

- 교육부가 특구육성종합계획(5년마다 수립)을 수립·추진하고, 광역지자체가 매년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지정절차

-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하고,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함
- 현재 전국에서 6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 재정 지원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시도지사의 출연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규제특례

- 교육국제화특구는 토지이용, 교육, 권한위임 등 크게 3가지의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음
-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지역특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규제특례임
- 교육 관련 규제특례는 교육 과정 규정 및 검인정 교과서 사용의 예외에 관한 규제특례임
- 권한위임 규제특례는 교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임

(4) 관광특구

□ 개요

-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하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가 목적임

□ 주요 내용

- 영업 제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지정 및 운영

-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함
-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함
- 현재 전국에서 3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 재정 지원

- 관광객 유치 시설에 대한 기금 대여 및 보조(관광진흥개발기금)가 가능함

□ 규제특례

- 목적과 규제특례가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사례임
- 영업제한 규정의 완화, 공개공지 활용 특례, 차량 제한 특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제특례 등이 있음

(5) 지역특구와 유사제도 규제특례 비교

- 지역특구는 규제특례만 적용되는 데 비해 다른 국내 특구들은 세제 혜택 또는 재정 지원이 병행되고 있음
- 국·공유재산의 사용, 대부, 매각,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 이용 관련된 규제특례는 지역특구와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역특구는 사업 유형에 제한이 없어 규제특례의 범위가 다양하나 다른 특구에서는 한정된 목적에 따라 규제특례 범위가 제한적임
 - 지역특구는 농수축산업 관련 규제특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음

【표 4-7】 지역특구와 유사특구 비교

구분	지역특구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교육국제화특구
목적	규제특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물류 중심지 육성	지역 연구역량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도입 시기	2004년	1993년	2003년	2005년	2012년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운영 기관	지자체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연구특구진흥재단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지자체
관계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규제 특례	일반, 토지이용, 권한위임 관련 규제특례 128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 영업제한 완화	개발사업 지원 제도 및 개발 관련 규제 완화	개발사업 지원지도 및 개발 관련 규제 완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규정의 완화
규제 특례 범위	특례대상 폭이 넓음	홍보, 영업	개발, 기업	개발, 연구	교육
신청 주체	지자체 위주	지자체	광역시자체	광역시자체	광역시자체 + 교육청
지정 주체	지역특구위원회	광역시자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지정 요건	지역특화사업의 계획의 적정성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지구개발, 정주여건	연구개발특구 계획의 적정성	외국어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 여건
지정 제한	지자체당 3개까지	시·도당 1개소	-	-	-
현황	123개 지자체 198개소	13개 시·도 32개소	7개소	5개소	6개소
정부 지원	규제특례, 예산지원 없음, 기타 특혜 없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우수특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예산 차등 지원	예산지원 및 특구펀드 조성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시·도지사의 출연 또는 출자
기타	-	지정요건완화에 따른 특구 지정 급증, 정부지원 축소	각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추진, 경제특구에서 명칭 변경	특구별 활성화 추구	-

2. 국외 특구제도

1) 일본의 특구제도

(1) 개요

- 장기적인 경제 침체 극복,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 정부 규제와 민간 창의성 제한 극복,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 규제개혁 등을 위해 다양한 특구제도를 추진하게 됨
- 본격적인 특구제도는 구조개혁특구로, 고이즈미 내각은 경제침체 극복과 지역활성화, 구조개혁을 위해 구조개혁특구를 도입(2003년)하였고, 세제 및 재정 지원 배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관련 4개 본부의 사무국을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현 지방창생추진실)으로 개편함
 - 당초 구조개혁특구는 세제 및 재정 지원은 배제하고 규제특례만 적용
- 고이즈미 내각 이후 칸 내각은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규제특례와 세제, 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특구를 도입(2011)하였음
 - 국제전략종합특구와 지역활성화종합특구로 구분하여 추진
-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하에 강력한 규제개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거점 육성 형태인 국가전략특구를 도입(2013)하여 추진하고 있음

(2) 구조개혁특구

- 고이즈미 내각은 규제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구조개혁특구를 도입하였고, 추진의 근거가 되는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은 기본 방침, 특구계획의 인정과 승인, 규제특례 조치,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 절차는 지자체가 민간 제안을 포함하여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신청
 -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의 특구계획 검토와 규제특례 적용 협의를 거쳐 총리가 인정하고 특구 사업 실시
- 평가조사위원회는 규제특례 효과와 폐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전국전개 등 대응

방침을 제기하고, 추진본부(총리)가 이를 결정하여 규제개혁과 연계

- 운영 조직(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은 기본방침의 작성과 실시, 구조개혁특구 운영과 기획, 종합 조정 등 담당
- 규제특례의 제안 모집은 매년 2회, 지자체 및 민간을 대상으로 신규 규제특례 제안 접수, 검토를 통해 전국전개, 규제특례로 인정(특구적용) 등으로 처리
- 전국적으로 확대된 규제특례로는 NPO의 복지서비스와 장애인 관련(복지), 학교 설립 및 학교밖청소년 관련(교육), 유치원과 보육원 및 급식 관련(보육), 주류 제조 면허 관련(농업), 외국인 체류 관련(산업활성화) 등이 있음
 - 전국으로 확대된 규제특례들은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되거나 규제특례의 범위가 소규모로 세밀한 경향이 있으며, 시행령(규칙) 단위의 규제특례들도 있음

(3) 종합특구

-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활성화의 종합 추진과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종합특구를 도입하게 되었고, 추진 근거인 종합특별구역법(종합특구법)은 기본방침, 국제전략종합특구와 지역활성화종합특구에 적용되는 특례 조치(규제특례, 세제혜택, 이자보조금 지급 등), 특구계획의 승인과 방침의 수립, 종합특구추진본부와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 절차는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추진본부의 의견과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를 받아 총리가 지정함
 - 신규 특례 조치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며, 민간은 지자체의 신청 내용에 대해 제안 가능
- 운영 조직인 종합특구추진본부는 본부장(총리), 부분부장(관방장관, 특구담당대신), 국무대신으로 구성됨
 - 특구지역협의회는 총리, 국무대신, 지자체장이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 등 추가
- 운영 현황으로 국제전략종합특구 7개와 지역활성화종합특구 41개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의 규제특례, 법인세 경감과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종합특구추진조정비 등의 재정 지원, 이자보급금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4) 국가전략특구

- 아베노믹스와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주도 거점 육성 방식의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하였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특징은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와 특구별 종합추진본부를 신설하고, 국가·지자체, 민간이 삼위일체가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가전략을 우선으로 하는 하향식 신속 추진 체계의 확립과 이전 특구제도의 한계와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것임
- 추진 절차로 총리는 자문회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방침 수립 및 결정을 하고, 특구장관과 지자체 등은 특구회의를 구성,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인정을 신청하며, 총리는 자문회의의 의견을 청취하여 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계획에 따라 특구회의를 중심으로 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규제완화 등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고용, 의료, 농업, 관광 등 분야별 규제를 완화하여 대도시 역세권 개발(용적율, 도로교통법), 상담센터 설립 등(노사분쟁 예방), 국제 경쟁력 보유 대형병원 육성(병상 신·증설), 외국인 의사 자유진료,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 대형 기업농 육성(농지매매 권한 지자체 위임), 고민가 등의 숙박 허용 등이 규제개혁의 주 내용으로 되어 있음

【표 4-8】 일본의 특구제도

구분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법률 제정	2002년	2011년	2014년
목적 및 특징	지역재생 및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선택과 집중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중점 추진
지원	지역에 한하여 규제특례 조치	규제특례 조치, 세제 및 재정, 금융상의 조치	세밀한 규제개혁 완화 제시
추진 주체	민간, 지자체 제안, 중앙정부 인가	민간, 지자체 제안, 중앙정부 인가	중앙정부 기관장, 지자체장, 민간대표 3자회의로 결정

2) 미국의 특구제도

- 미국의 특구지역은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정치적 하부조직을 말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와는 독립적인 범용정부 단위로서 존재하며, 특별지방정부로 정의되면 대부분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련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도 함
-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서비스인 모기퇴치, 공동묘지 유지, 화재예방, 병원서비스 등이 있으며, 특구의 서비스 영역규모는 단일블록에서 여러 카운티를 포함하는 영역까지 그 규모 또한 서비스의 영역만큼이나 다양한 것이 특징임
- 미국의 특구는 단일특구와 다기능 특구, 사업형 특구와 비사업형 특구, 독립형 특구와 종속형 특구 등 세 가지 대조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단일특구는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기능 특구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특구임
- 사업형 특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이며, 비사업형 특구는 대부분 주의 재산세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독립형 특구는 그 구역 유권자들에게 선출된 자치위원회를 갖고 있고, 종속형 특구는 기존의 입법부에 의해 관할되고 있음
- 특구의 지정개수는 2010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둔화하고 있는데, 이는 특구가 합병되거나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특구의 장점은 특구내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서비스 공급을 하게 되고, 공공 서비스를 위한 세금 혜택을 납세자가 직접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되며,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동체라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것 등임
-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특구가 있을 경우 원래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시와 특구가 함께 제공할 경우 구역 분배의 문제 등이 발생함

3) 싱가포르의 특구제도

-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국가 전역을 경제특구인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함
- 국내자본과 시장이 거의 없기에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모든 산업에 허브를 붙여 무역, 물류, 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하고 있음
- 싱가포르를 경제개발특구의 성공요인은 경제특구 건설을 통해 경제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것과 싱가포르의 높은 투자 매력도라 할 수 있음
- 싱가포르의 투자 매력도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탁월한 사회간접자본, 정치·사회적 안전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장점이라 할 수 있음

4) 외국 특구제도 시사점

- 일본, 미국, 싱가포르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특구의 목적 및 유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 및 목표에 따라 이에 맞는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특구 유형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 세제 및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은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구 지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규모 및 영역 등이 다양하며 세제 혜택을 납세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경제특구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선진국과 직접 연결하여 발전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방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표 4-9】 국외 특구제도 비교

구분	일본	미국	싱가포르
목적 및 특징	정부와 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지역 재생 및 활성화 도모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단일 서비스를 제공	국토 전체가 하나의 경제특구로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 선진국과 직접 연결해 발전하는 전략
특구 유형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단일특구와 다기능특구 사업형특구와 비사업형특구 독립형특구와 종속형특구	금융, 교역, 서비스 허브
지원	특구 유형에 따라 규제특례, 세제 및 재정, 금융상의 조치	세제 혜택	기업의 투자환경 개방, 다양한 세제 혜택

3. 관광활성화를 위한 섬 특구 개발 및 지정 방안

1) 섬 특구 개발 방안

- 섬 특구 지정을 위한 도서개발 에 있어서 먼저, 도서개발 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음
- 섬을 통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휴양을 할 수 도 있고, 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섬
고유의 문화와 풍습 등을 체험할 수도 있음
-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축에 때한 강력한 규
제를 하여 고유의 역사와 문화만을 가지고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섬을 호텔, 쇼핑센터, 리조트 등과 같이 현대적으로 개발하여 섬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결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음
-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도서개발 을 통한 관광객의 유인과 동시에 지역특구로의 지정
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도서개발 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
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1) 관광형

- 관광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둔 형태로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섬이 적절한 형태임
- 건축 및 시설 도입을 통하여 대규모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섬으로 관광 편의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여야 함
- 따라서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이 요구되는 매스 투어리즘이 가능한 섬이 관광형으로서 적정할 것임

(2) 휴양형

-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된 섬 또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정주 및 휴양 여건의 조성이 가능한 섬이 적정함
- 섬의 고유한 자원 특성을 유지하고 보존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곳으로 체류가 가능하여야 함
- 섬 단독으로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발전할 수 있는 섬이 적정할 것임

(3) 자연활용형

- 자연 그대로의 매력을 활용한 섬으로 규모가 작아 대규모 관광객 수용이 곤란할 수 있음
- 섬의 독특한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소규모이지만 고급스러운 경관 연출을 통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여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함으로써 즐길거리가 있는 섬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음

(4) 관람형

- 규모는 작지만 친환경적인 관광시설 개발을 통하여 섬 생태환경과 조화된 자연친화

적인 관광 명소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이 단기간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 섬이 적정함

2) 섬 특구 지정 방안

- 섬 특구 지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역특구 지정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공동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지역특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도서개발을 통한 지역특구 신청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업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특화사업을 계획하여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하여야 함
- 우리나라 지역특구는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고, 섬 특구 같은 경우는 향토자원과 관광레포츠 유형으로 특구 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음
- 본 과업에 있어서도 섬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향토자원 유형과 관광레포츠 유형의 지역특구 지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 향토자원의 6차 산업화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지역특구의 주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특구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음
- 최근 지역특구 지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음
- 지역특구에 있어서 향토자원의 대부분은 농수산물으로 그 지역에서 향토자원이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상당할 때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향토자원을 통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최근 6차산업화를 통한 특구 지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6차 산업화는 농업과 어업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본 과업에서는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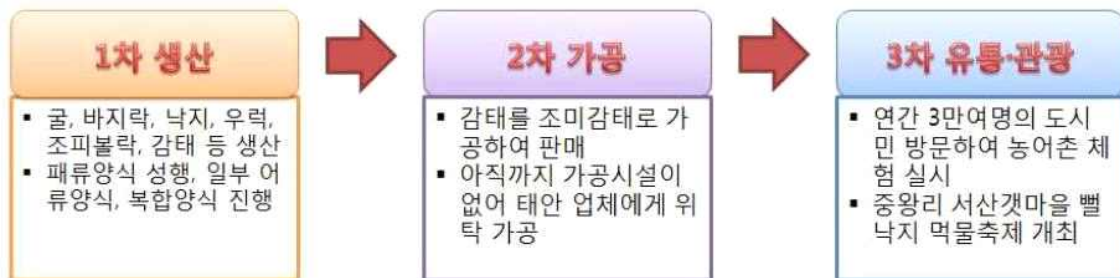
□ 6차 산업화

- 정의 : 1차(어업), 2차(수산물가공·식품제조), 3차(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 산업 간의 융·복합으로 통하여 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는 사업 및 활동을 말함
- 법적 근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2조
- 목적 :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어촌주민 주도로 특화계획에 따라 1·2·3차 산업과 융합·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6차 산업화의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2013)에 의하면 “6차산업화 유형은 추진주체에 따라 농어가(農漁家), 마을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리고 개별경영체 등이 경영을 다각화하는 방식과 주체 간의 제휴·연대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영을 다각화하는 방식은 경영체가 1차·2차·3차로 다각화하거나, 다른 경영체에 대한 출자, 독립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고, 주체 간의 제휴·연대 등을 통한 방식은 주체의 범위에 따라 지역 내·지역 외·지역 간 연대하여 추진하는 방식임
- 개별 경영체가 스스로 1차·2차·3차 산업을 추진하는 경영체 6차산업화와 지자체 또는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경영다각화, 경영 간 연대,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 6차산업화가 있으며, 또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중점사업에 따라 1차 주도형(생산), 2차 주도형(가공), 3차 주도형(유통·관광)으로 구분 가능함

□ 6차 산업화 사례 : 중리 어촌체험마을

- 서산시 중왕리에 위치한 중리 어촌체험마을은 중왕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총 47가구,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체험마을의 중심이 되는 중왕 어촌계는 총 101명으로 중왕1리와 2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감태·굴·바지락·낙지·주꾸미·우럭 등을 생산하고 있음
- 어촌체험마을은 2013년 8월에 지정되었으며 연간 3~4만명의 도시민이 방문하고 있음. 특히, 2014년에는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 생산 분야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굴·바지락·낙지·감태·우럭·조피볼락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로 패류양식이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 어류양식·복합양식도 하고 있음
- 가공 분야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감태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공공장이 없어 인근 태안에서 위탁가공하고 있으나, 어촌계에서 생산된 감태를 조미감과 같은 조미감태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
- 체험·관광 분야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바지락 캐기, 좌대낚시 등의 어촌체험뿐만 아니라 감자캐기 등의 농어촌 복합마을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그림 4-10】 중리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 추진과정

□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특구 지정

- 6차 산업은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을 모두를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임
-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섬 단독으로 지역특구 지정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기초자치단체 내 섬과 섬 또는 육지와 섬 등을 연계하여 향토자원을 이용한 6차 산업화를 통하여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임

- 물론 6차 산업화 외 특화사업으로 기반시설, 관광시설, 편의시설 조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과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음식 개발, 축제 개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구 신청을 할 수 있음

(2) 관광레포츠유형의 특구지정

- 섬 지역의 관광레포츠 유형 특구지정에 있어서의 전략은 기존의 대단위 관광시설 또는 레포츠 시설 조성 및 리조트 개발 등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최근 “생활관광”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관광을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현지인 다운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부의 생활관광 개념에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내재되어 있음
- 2019년 7월 현재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총 6개 지역을 선정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음

【표 4-10】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의 유형 및 개념

구분	주요내용	선정규모	국비지원
현지 나들이 생활관광	관광객 보다는 현지인이 주로 가는 골목길·공원·맛집·문화예술공간 등 현지인들의 생활장소와 이야기를 관광자원화하여 짧은 기간(반나절~하루) 동안 장소와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들이 개념의 관광(여행)형태	4개	각 50백만원
현지 살아가기 생활관광	방문지역에 일정기간(7일 이상) 체류(숙박)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더 나아가 그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관광(여행)형태	2개	각 100백만원

- 정부에서는 생활관광을 크게 ‘현지 나들이 생활관광’, ‘현지 살아보기(장기체류형) 생활관광’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음
- 현지나들이 생활관광은 일상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일상 지역을 영위하면서 짧은 시간 여행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장기체류형 생활관광은 다른 지역에 가서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형태를 의미함
- 섬 특구의 경우는 ‘현지 살아보기(장기체류형) 생활관광’에 포커스를 맞추어 특화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4-11】 체류형 생활관광의 범주

자원성의 내용	관광 등의 활동	행동권	체제기간
훌륭한 곳을 즐기는 자원성, 쾌적한 곳을 즐기는 자원성	• 해수욕, 피크닉, 낚시, 요트, 수상스키, 스킨다이빙, 골프, 스키, 등산, 하이킹, 수렵 등 • 자연탐방, 드라이브, 사이클링, 주유, 야외캠프	소역적 / 중역적	반일
다양한 경치를 즐기는 자원성, 쾌적한 휴양 및 숙박 자원성	• 캠프, 보양, 휴양 등	중역적 / 광역적	1일 이상

- 관광레포츠 유형의 섬 특화사업의 전략을 체류형 생활관광으로 하면, 섬 관련 스토리텔링, 섬 고유의 생활 문화, 음식, 전통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섬 특구 홍보 계획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생활관광 사례 : 대만 컨딩

- 대만 최남단에 위치한 컨딩은 대만 최고의 휴양지로 열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임

- 대만의 땅끝 마을인 컨딩은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덕분에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모래가 곱고 부드러움
- 수질이 맑고 깨끗해 스킨스쿠버나 스쿠버 다이빙, 수상 오토바이 등 해양 스포츠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음
- 컨딩에서 유명한 또 다른 해변으로는 바이샤완 해변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현지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관광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음
- 더 한적한 샤오완 해변은 컨딩의 변화가인 컨딩 따지에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난완 해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수질이 깨끗하고 백사장관리도 잘 돼 있어 물놀이하기 좋으며, 저녁이 되면 노천 바에서 낭만적인 라이브 공연이 열려, 밤바다의 운치를 느낄 수 있음
- 컨딩은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곳으로 유명 도시 전체가 국가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어란비 공원은 대만 8경 중 하나임
- 새하얀 등대와 바다, 녹색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 석회암 암초를 볼 수 있는 해안산책로 등 관광 매력이 도시 전체에 가득함
- 어란비 공원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간 롱판 공원은 컨딩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에 자리한 곳으로 바다와 절벽, 초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형이 어우러져 있음
-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 박물관인 국립 해양 생물 박물관은 가족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과 희귀종인 흰돌고래가 있는 것으로 유명함
- 서식하는 해양 생물만 해도 무려 1만5000여 마리로 이곳에서는 관람객이 해양 생물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감할 수 있음
 - 해저터널에서 머리 위로 고래가 지나가는 광경을 바라보고, 펭귄에게 먹이를 주고, 해삼이나 조개 등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등
- 해가 지면 컨딩 따지에 거리에 야시장이 열리며 다양하고 저렴한 먹을거리로 관광객

의 인기를 끌고 있음

- 바다가 인접한 도시답게 해산물 요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대만의 음식 문화와 현지인의 생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임



【그림 4-11】 대만 컨닝

(3) 섬 특구 지정 전략

□ 기초자치단체 전략 수립

- 특구 지정을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

□ 특구 대상 지역 설정

- 먼저 특구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선정
 - 특구 지역은 지자체 내 여러 곳을 선정하여도 무방함. 단 타 지자체 지역은 안됨
 - 특구 계획 수립 시 특구대상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구지정이 이루어진 후 변경은 변경특구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가능함
- 대상 지역주민과의 기초적인 교감 필요
 - 특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또는 주민 동의는 매우 중요하고, 주민의 협조 없이는 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곤란함

□ 특화사업 설정

- 특화사업은 지역특구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기에 반드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특화사

업으로 하여야 함

- 매년 지역특구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실행 가능한 특화사업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특구의 특화사업에 민간투자자 참여가 필요할 경우, 특화사업 참여자 모집을 하여 단위 특화사업자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역특구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에 특화사업에 따라서는 반드시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세부사업계획 수립

- 특화사업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
 - 예를 들어, 향토자원 특화사업을 할 경우에 전략적으로 향토자원 생산 증대에 특화사업의 전략이 있다면, 향토자원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은 부가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음
 - 한편으로 향토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음식 개발, 축제 개최 등과 같은 사업도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음

□ 규제특례 적용

- 규제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규제특례의 적용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 특구지역이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각각의 특구지역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야만 특구지정이 가능하므로 특화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규제특례 적용가능 여부의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특구의 명칭은 특색있고 한 번 듣거나 보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음
 - (예시)섬 생활체험특구, 보성 벌교꼬막산업특구, 해남 공룡문화특구 등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과업수행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과업수행 종합

- 본 과업의 목적은 전라남도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섬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해소 방안 및 특구 지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본 과업에서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또한 전라남도 섬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함
 - 전남 섬 캠핑장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 전남 섬 캠핑요리 개발 및 보급
 - 전남 섬 야간 특화축제 개발
- 본 과업에서는 전라남도 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할 수 있는 홍보 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함
 - 전남 섬 12경 선정
 - 전남 섬 캐릭터 상품 개발
 - 전남 섬 홍보 유튜버 경진대회 추진
- 본 과업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역특구법 제44조 : (추가)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16 제2호 카에 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항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지역특구법 제65조 : (추가) ① 20.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수도법 제2조의9에서 규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수질기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지역특구법 제6조 : (추가) ③ 3.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른 자연공원 지정해제
- 지역특구법 제65조 : (추가) ①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허가

- 본 과업에서는 「도서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제1장 총칙	제27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조 목적	제28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9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장 도서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제31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4조 기초조사	제32조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33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6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34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제3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8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36조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9조 제한적 토지수용	제37조 국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제38조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제11조 조세의 감면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1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0조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 특별개발우대사업	제41조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42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43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16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제4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17조 공유수면 사용 및 점용에 관한 특례	제45조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제18조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제46조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47조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제20조 관광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제48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제21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제49조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5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3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장 벌칙
제2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제51조 과태료
제25조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고발 및 통고처분
제26조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부칙

- 본 과업에서는 섬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향토자원(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특구 지정) 유형과 관광레포츠(장기체류형 생활관광) 유형의 지역특구 지정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함

제2절 정책적 제언

1) 도서 실태 조사 및 방향 정립

- 전남의 도서별 실태파악은 향후 개방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임으로 도서별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정비가 필요함.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 국내 통계자료를 보면 출처에 따라 도서에 관한 정보가 상이하여 도서별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임. 전남의 도서 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 기초자료 정비작업을 이루어야 할 것임
- 도서별 기초자료와 특성이 정비되면, 그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 등의 보다 상세한 도서별 특성 파악에 의해 향후 개발하여야 할지 보전하여야 할지,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 등에서 살펴보았듯이 최대한 소극적인 개발을 하며, 특히 소규모 섬일 경우 경유 관광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전남의 도서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함.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섬마다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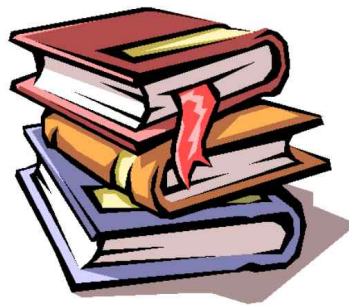
2) 섬 규제특례 발굴단 구성 운영

- 전남의 도서들은 현행법 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를 회피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특구 지정을 통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지역특구법의 규제특례는 제한적이라 섬 개발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 할 수 있음
- 지역특구법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규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전남 섬 규제특례 발굴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섬 개발을 막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파악하여 섬 개발을 위해서 현행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섬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특례 데이터는 전남지역 지자체 담당자와 섬 개발을 하고자 하는 민간 개발업자 등에게서 확보할 수 있음
- 섬 규제특례발굴단은 전남 섬 지역의 규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규제특례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과 신규 규제특례(안)를 제안하며 소관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3)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 세금 감면이나 예산 지원이 없는 지역특구의 특성상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섬 개발에 필요한 규제특례의 발굴은 매우 중요하고, 규제특례를 위한 수요조사의 실시와 지역 내 민간부문의 수요조사 참여를 통한 규제특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섬 개발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고, 개발 후 운영 역시 행정이 하기는 곤란하기에 섬 개발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재정적인 투자 및 향후 운영 등을 민간이 계속 참여함으로써 섬 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에 섬 개발과 관련한 민간부문에서의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계획 또는 섬 개발 계획에 반영하며, 지역특구는 재정적 지원이 없기에 예산이 부수된 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



참 · 고 · 문 · 헌

참 · 고 · 문 · 헌

■ 보고서 / 논문 / 정부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0.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II』
-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2018. 『<섬의 날>제정에 따른 섬 발전정책 및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김준. 2016. 『섬 자원 이용형태와 지속가능한 섬발전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3. 『6차산업화 우수사례집』
- 대한민국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_____. 2019. 『보도자료 : 2019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 6개 지역 선정(2019. 10. 16.)』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19. 『보도자료(2019.12.16.) : 2020년 국내여행 트렌드는 ‘R.E.F.O.R.M.’』
- 박성현·김병섭. 2018. 『도서(島嶼)지역 문화재의 분포 특성과 관광적 활용방향 모색 : 전라남도 개발대상도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3): 117-131.
- 박진경. 2017.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129-153.
- 신순호·박성현. 2014. 『도서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식구조의 변화 분석: 195년과 201년의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 203-235.
- _____. 2017. 『지방정부 도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광역시·도의 도서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105-128
- 충남연구원. 2015.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사례연구』
-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_____. 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 행정안전부. 2009. 『도서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행정자치부. 2016.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8-20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항시설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64호, 2020. 3. 31., 일부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85호, 2020. 2. 11., 타법개정]
-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23호, 2020. 2. 18., 일부개정]
- 노인복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일부개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일부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753호, 2017. 3. 21., 타법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3호, 2019. 12. 10., 일부개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

부개정]

농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도로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도서개발 촉진법. [법률 제15498호. 공포일 2018.03.20. 시행일 2018.09.21]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595호, 2019. 11. 2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7호, 2019. 11. 26., 일부개정]

방어해면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294호, 2008. 12. 31., 일부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17호, 2020. 5. 26., 일부개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일부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7013호, 2020. 2. 18.,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10호, 2019. 12. 3., 일부개정]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92호, 2012. 12. 18., 일부개정]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97호, 2019. 12. 3., 일부개정]

습지보전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80호, 2016. 1. 2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어촌·어항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107호, 2020. 3. 24., 일부개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연안관리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48호, 2020. 2. 18., 일부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온천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 자연공원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타법개정]
- 지하수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0.05.13.] (일부개정) 2020-05-13 조례 제2523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2020-07-15 조례 제2579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특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 하천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항만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전부개정]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57호, 2020. 2. 18., 일부개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1호, 2020. 2. 18., 일부개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70호, 2019. 8. 27., 타법개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79호, 2017. 3. 21.,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인터넷 사이트

가고 싶은 섬. <https://www.jndadohae.com/>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전남의 섬. <http://islands.jeonnam.go.kr/>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